www.kotra.or.kr

KOTRA자료 20-240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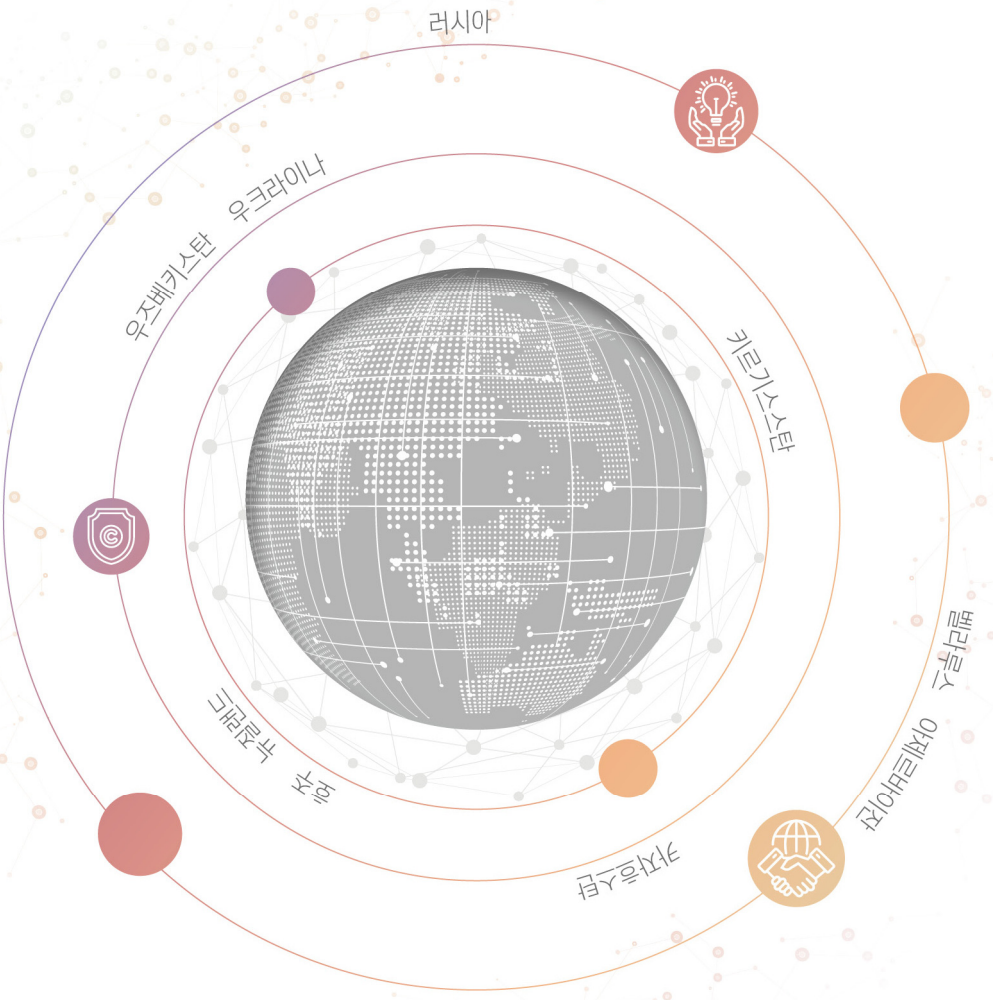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Ⅰ. 러시아 1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4

Ⅱ. 벨라루스 2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3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4
04. 기타 45

Ⅲ. 아제르바이잔 4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4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54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62

Ⅳ. 우즈베키스탄 6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6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6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82

Ⅴ. 우크라이나 8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8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89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01

Ⅵ. 카자흐스탄 105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0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1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22

Ⅶ. 키르기스스탄 12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2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2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41

Ⅷ. 뉴질랜드 143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4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4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56

Ⅸ. 호주 157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5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6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80
04. 기타 182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Ⅰ. 러시아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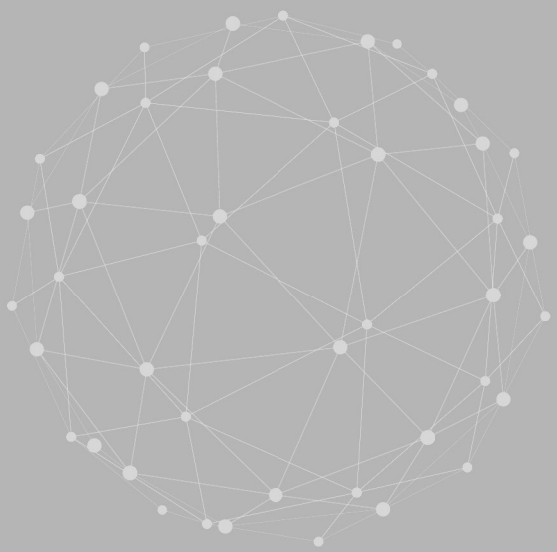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종래에는 특허법, 상표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모두 민법전 제4부로 이전해 규율하고 있다. 민법전 제4부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지적재산권, 물권, 독점권, 허가계약, 변리사, 강제실시 및 관련 세금규정 등 포함)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특허·발명·영업비밀권 및 상표(브랜드)화에 관한 권리요건(회사명, 상표권, 원산지표시 규정 등) 등 또한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민법전 특허편에 의하면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 즉,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은 가운데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때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반면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호기간은 10년이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물품의 외관을 한정하는 예술적-구조적 해결책, 즉 예술적 산업디자인 표현 등은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을 단위로 4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영업상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과 이들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한편,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특허청과 지식재산 법원이 있다. 러시아 특허청은 특허 출원, 심사, 등록 및 이에 대한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식재산법원은 특허권 분쟁의 1심 및 상고심을 담당한다.

이 외, 러시아는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을 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러시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1. 12. 25.)	가입	가입	가입 (1997. 6. 10.)	가입	가입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러시아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은 크게 특허청과 지식재산 법원이 있다. 특허청(Rospatent)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권리의 양도와 사용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한편, 특허등록비 등 관련 비용 납부 및 특허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를 관리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수행한다.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며, 1심 법원 및 상고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정부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의 부여 및 법적 보호와 관련된 분쟁,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합병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연방 반독점청의 결정에 대한 판단 및 각종 권리의 무효를 확인한다. 상고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심리 및 러시아 연방 상사법원이 1심 및 항소심에서 내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그림] 러시아 특허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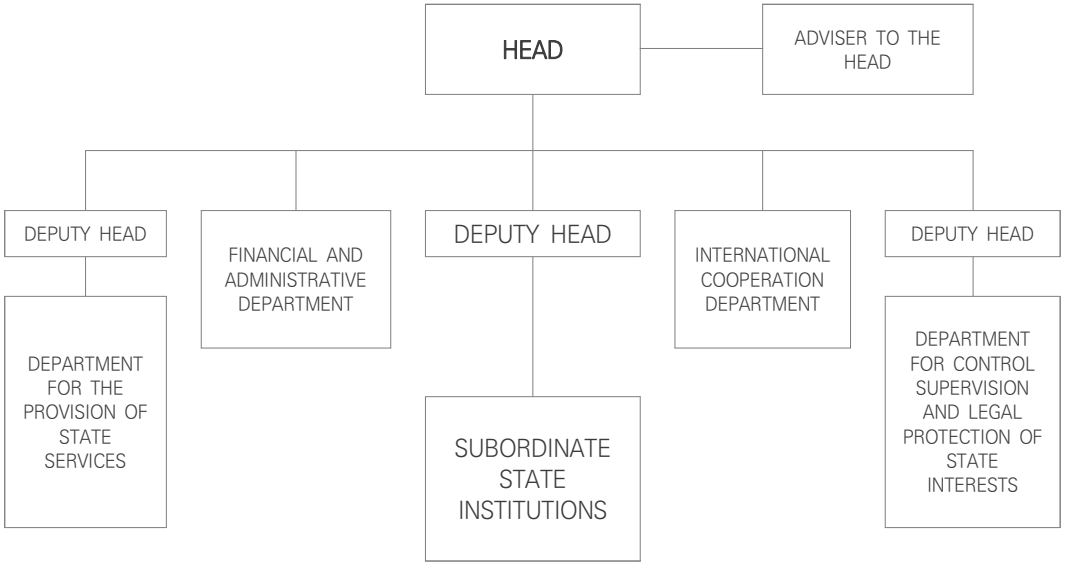

※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은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APO는 지난 1995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8개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한다.[1)]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동의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창설목표로, 이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2019년 11월 1일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2)]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4,370	16,236	178,024	61,687	3,183	4,130
2015	29,567	16,248	161,696	57,357	2,616	3,386
2016	27,136	14,792	193,213	58,128	2,912	3,653
2017	23,115	14,106	233,430	58,296	3,789	3,601
2018	25,333	13,031	203,854	59,698	3,822	5,121

1)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2)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RU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

러시아 민법전은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 즉,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은 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1350조). 물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치, 물질, 미생물, 식물이나 동물세포 배양 등을 포함하고 물질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기법에 관한 방법은 방법발명으로서 보호된다. 질병의 치료방법도 발명으로서 보호된다.

한편,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제조된 물품의 외관에만 관련되는 제안, 게임과 지적 또는 경제활동의 규칙과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표현만으로 구성된 솔루션 등은 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다(민법 제1350조 제5항).

또한, 미생물에 관한 방법, 미생물에 관한 방법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 식물의 품종, 동물의 동족,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동/식물을 획득하는 방법, 집적회로의 배치설계(Topography)는 특허될 수 없다(민법 제1350조 제6항).

나. 등록요건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 신규성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은 선행기술에 의해 예측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1350조 제2항).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선행 기술에는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선행 기술에는 러시아연방에서 다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고 선출원일을 갖는 발명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및 선우선권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PCT 국제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에서 특허되거나 등록된 발명 및 실용신안이 포함된다. 또한, 선행 기술에는,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개되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문서 및 부여된 특허에 대하여 공개되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문서도 포함된다(민법, 제1350조

제2항, 제1385조 제2항 및 제4항, 제1394조 제2항).

예외적으로,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발명에 관한 내용이 공중에 알려진 경우의 정보의 개시는, 그 정보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출원이 연방행정기관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발명은 그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입증 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한다(민법, 제1350조 제3항).

2) 진보성

발명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으면 진보성이 있다(민법, 제1350조 제2항). 여기서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함한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러시아 특허제도에 따르면, 발명이 공업, 농업, 보건 및 기타 산업분야 및 사회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민법, 제1350조 제4항).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특허출원(제1375조)

특허 출원서는 ① 발명의 저자 및 출원인, 즉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각각의 거주지 또는 위치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 ②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로 본질을 공개하는 발명에 대한 설명, ③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발명의 설명에 완전히 근거한 청구항, ④ 발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 및 기타 자료, ⑤ 요약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PCT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2)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민법 제1384조)

특허청에 대해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민법 제1375조 제2항에 의한 서면과 요건이 확인된다. 특허청은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출원일과 함께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출원이 출원에 관한 서지적 사항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3개월이 이내 흠결을 치유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정기간 이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상술한 기간은 특허청에 의해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되는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3) 실체심사(제1386조)

출원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지정기간 이내에 실체심사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원일 이전에 우선권이 주장되면서 출원일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의 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제1386조 제3항). 선행기술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해야 하는 기간은, 필요한 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구비되지 않아 다른 기관으로부터 획득되어야 하는 경우나 청구된 발명의 속성상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은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출원인 또는 제3자는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선행기술조사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4) 특허 등록 및 불복절차

특허 출원신청서 심사 결과, 출원인이 청구한 발명이 민법 제1350조에서 규정한 특허성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해당 발명이 특허성 조건을 적어도 하나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출원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 거절 결정을 내린다(민법 제1387조 제1항, 제2항).

특허청에 의해 거절결정 및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표시해야 한다(민법 제1387조 제3항).

5) 등록절차기간

러시아에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4년이다.[3)]

6) 변리사 대리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러시아에 등록한 러시아 변리사 대리인을 통해 특허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라. 특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행정기관에 최초로 출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20년간 지속한다.

2) 특허권의 양도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계승이나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될 수 있다(민법 제1357조).

또한, 특허권자는 발명 등에 대한 독점권을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1358조), 발명에 대한 독점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특허권 양도계약)에 의해, 일방 당사자(특허권자)는 다른 당사자(특허의 수령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지적활동의 완전한 결과에 대한 독점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1365조).

3) 권리의 실시

특허권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을 포함한 실시권 계약은 특허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법정 등록의 대상이 되며, 등록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실시권은 계약에 의해 부여되거나 강제 실시권 발생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특허권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어, 시장에서 각 제품, 영업, 서비스의 부족이 초래된 상황에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을 원하는 타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

3) https://www.ip-coster.com/IPGuides/patent-russia

자에 대하여 해당 발명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우선일 이전에 어느 누구라도,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해결책을 고안하고 선량한 의도로 사용했거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 종전의 사용을 확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선량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가 부여되고(민법 제1361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특허가 특허등록 유지료의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 특허청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복된 경우, 특허가 만료한 시점부터 특허청이 특허에 대한 회복을 공개한 시점 사이에,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제조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면 해당 사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상의 후사용권을 갖는다(민법 제1400조).

마. 심판제도

특허청에 의해 거절결정 및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표시해야 한다(민법 제1387조 제3항).

특허권은 법이 규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된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바가 출원일에 제출된 발명의 최초 청구항, 상세한 설명, 도면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우선일을 갖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가 등록된 경우, 창작자가 아닌 자가 창작자로 표시되거나 창작자에 해당하는 자가 창작자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될 수 있다. 특허권에 대한 무효사유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무효를 구하는 사법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98조).

바. 비용[4)]

(단위: RUR)

구분		관납료
출원	기본	3300
	10항초과시 1항당	700
특허출원 청구범위에 새로운 청구 추가	실체 심사 전에 요청을 제출한 경우 1항당	700
	실체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경우 새로운 독립항당	4700
특허 출원의 실체심사	출원시 심사가 요청된 경우	12500
	1 독립항 초과시 독립항당 9200	
	출원시 심사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4700
	1 독립항 초과시 독립항당 2800(단 총 5개 미만 초과)	
	5 독립항 초과시 독립항당 5400 추가	
답변 제출 기간 연장	1-6개월	800/월
	7-10개월	1100/월
특허 공개		3000
특허 등록		3000
특허 부여		1500
갱신		1700-24000
특허 등록사항 변경	1 변경 당	2000

4) https://www.patentica.com/news/327-changes-in-the-official-fees-of-the-rupto-since-6-october

사. 유라시아 특허제도[5)]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연방의 해체 후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통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서를 국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별 공화국의 특허심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라시아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였고,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을 우대하며 출원심사는 러시아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특허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진행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따라서 모든 출원서와 서류는 제출되거나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APO와의 모든 서신(문서)은 등록된 유라시아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EPO 절차와 달리,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할 때 체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 특허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

(3) 출원서가 유라시아 특허청에 의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유라시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고자하는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체약국에서 유라시아 출원서(신청서)는 유라시아 출원서와 동일한 출원일 및 우선일로 국가별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가 출원서로 간주된다.

(4) 특허 출원에 관해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가 진행되며,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공개일(발행일)로부터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하고,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 특허와 동등하다.

5)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2.2. 실용신안

가. 보호대상

러시아 민법전 특허편은 실용신안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실용신안특허라는 형태로 보호된다. 장치에 관련된 기술적 해결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된다. 방법에 관한 고안은 특허로는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물질, 화학물질,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미생물 균주 등에 관한 고안 역시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민법 제1351조).

나. 등록요건

민법 제13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실용신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발명에 대한 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를 받기 위해 진보성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필수적 특징을 종합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의해 예견되지 않는 경우, 실용신안은 신규하다. 선행기술은, 본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내에서 해당 발명과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장비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출판된 정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다. 선행기술은, 본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러시아연방에서 이루어진 발명 및 실용신안을 위한 타인의 출원, 러시아연방에서 이미 특허된 발명 및 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이 본 실용신안의 창작자, 출원인과 이들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지득한 타인에 의해 개시되더라도, 해당 개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용신안출원이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실용신안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해당 개시에도 불구하고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한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실용신안출원(제1376조)

실용신안 출원서는 ① 실용신안의 저자 및 출원인, 즉 실용신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각각의 거주지 또는 위치를 포함하는 출원서, ②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실용신안을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로 그 본질을 공개하는 실용신안에 대한 설명, ③ 핵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설명에

완전히 근거한 실용신안 공식, ④ 실용신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 ⑤ 요약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심사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출원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민법 제1376조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제1376조 제1항에 의한 단일성 요건 및 청구항에 기재된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해결책과 관련이 있는지가 심사된다.

청구된 실용신안이 민법 제1351조 제1항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특허요건(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는지는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지 않는다(민법 제1390조 제1항)

3) 출원의 공개제도 및 정보 검색 요청

러시아 특허제도에 의하면 실용신안출원의 경우에는 실체심사제도,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가 없다.

즉, 실용신안의 상세 사항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실용신안출원의 심사진행 동안 정보 검색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출원인 또는 제3자는 실용신안의 특허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대한 선행기술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의 종결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출원에 제출된 기술적 해결책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해당 출원의 서류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출원일과 우선일을 표시하면서 등록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출원에 제출된 기술적 해결책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내려야 한다(민법 제1390조 제4항).

5) 소요 시간

러시아에서 실용신안 등록까지는 약 1.5~2년이 소요된다.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실용신안에 대한 독점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행정기관에 최초로 출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지속한다. 실용신안권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2) 권리의 양도 및 실시

실용신안특허의 양도제도 및 실시권에 관한 사항은 발명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계승이나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될 수 있고, 실용신안권자는 독점권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실시권은 계약에 의해 부여되거나 강제 실시권 발생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4년 동안 특허의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의해 러시아연방에서 그 특허가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 강제실시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 허여일로부터 3년 동안 실용신안이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민법 제1362조).

마. 심판제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다(민법 제1390조 준용, 민법 제1387조 제3항).

실용신안권은 법이 규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사유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무효를 구하는 사법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98조).

바. 비용

(단위: RUR)

구분		관납료
출원	기본	1400
	10항 초과 시 1항당	700
실체심사		2500
답변 제출 기간 연장	1-6개월	800/월
	7-10개월	1100/월
갱신		800-4900

2.3. 디자인

가. 보호대상(민법 제1352조)

산업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한정하는 예술적-구조적 해결책, 즉 예술적 산업디자인 표현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대상이다. 산업디자인은 입체, 평면 또는 이들의 결합일 수 있다.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산업디자인,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해결책, 건축물(소형 건축적 형상은 제외), 액체, 가스 및 분말물질(dry substances) 등과 같은 불안정한 형상의 주제에 관한 해결책은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나. 등록요건(민법 제1352조)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신규성

산업디자인은 물품의 도면에서 확인되고 본질적 특징 목록에 열거된 그 본질적 특징 전체가 우선일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로부터 알려지지 않았으면 신규성이 있다.

2) 창작성

산업디자인은 그 본질적 특징이 물품의 특별한 미적 측면의 창작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산업 디자인 출원(민법 제1377조)

산업 디자인 출원서는 ① 산업 디자인의 저자 및 거주지, ② 상품 외관의 특성을 결정하는 산업 디자인의 필수 기능에 대한 완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들, ③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조립도의 일반 도면, ④ 산업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

산업디자인 출원이 출원되면 먼저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것인지 및 산업디자인의 단일성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심사된다(민법 제1384조).

3) 실체심사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에 관한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발명에 대한 특허와는 달리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실체심사청구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 심사 기간 중 출원인은 산업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산업디자인출원을 보정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는 추가 자료는 심사 시 고려되지 아니하며 이는 별개의 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다.

4) 소요 시간

러시아에서 디자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개월이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6)]

1) 존속기간(민법 제1363조)

산업디자인의 존속기간은 2015년 1월 1일 이전 등록의 경우 15년, 그 이후 등록의 경우 5년이다. 산업디자인의 존속기간은 2015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후는 각 5년씩 4회(총 25년 지속) 연장할 수 있다.

6) https://www.ip-coster.com/IPGuides/industrial-design-russia

2) 양도 및 실시권

산업디자인권의 양도는 특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특허된 산업디자인의 우선일 전에 그 창작자와 독립적으로 그 특허된 산업디자인에 유사한 해결책을 러시아 연방 내에서 선의로 창작하여 실시하거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한 자는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계속하여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선사용권).

산업디자인권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정당한 법적 이유 없이 허여일로부터 4년 동안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실시할 능력이 있으나 특허 소유자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자는 누구라도 강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마.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복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그 존속기간 중 어느 때라도 청구될 수 있다.

바. 비용

(단위: RUR)

구분		관납료
출원	기본	1700
	1개초과시 1 디자인당	700
실체심사	기본	3000
	1개 초과시 매 디자인당	2500
답변 제출 기간 연장	1-6개월	800/월
	7-10개월	1100/월
갱신		1700-24000

사. 유라시아 디자인 특허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하고,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2.4. 상표

가. 보호대상

민법전 1477조는, 상표등록증(민법 제1481조)에 의해 확인되는 독점권(상표권)을 인정한다. 상표라 함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영업상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과 이들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 등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민법 제1482조).

또한, 서비스표 즉,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영업 또는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와 관련된 법 조항이 준용된다.

한편, 등록에 기초하여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보호되는 상표, 등록 없이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보호되는 상표 및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표로서 사용되는 표장은, 그러한 상표나 표장이 출원서에 표기된 날까지의 강력한 사용의 결과로서 러시아연방에서 소비자들 간에 상품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저명상표로 선언될 수 있다(민법 제1509조)

나. 등록요건

러시아 민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는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 수행되는 업무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별력 있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1477조).

이에 따라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문자, 도형, 입체 또는 그 이외의 표장이나 이들의 조합이다. 상표는 출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등록될 수 있다. 표장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 및 공공의 이익, 인도주의의 원칙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장 등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민법 제1483조).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구비서류 첨부 여부 심사

출원인이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들 서류가 적절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개월 이내에 발송되는 심사 결과 통지(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심사 허용 통지 또는 거절이유 통지)로 종결된다.

2) 실체심사(민법 제1499조)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의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심사 허용 통지가 된 경우에는, 표장의 등록서 및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실체심사가 행해진다.

실체심사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실체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표장이 등록되거나 거절될 것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상기 심사관이 표장을 등록하는 데 어떠한 장애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거절이유를 발송한다.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데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따라 출원된 국제 상표는 러시아 상표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심사관이 예비적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상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위한 모든 기간이 종료한

이후(상표 소유자가 그것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최종 결정서를 송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 더 다툴 수 있다.

4) 소요시간

러시아에서 상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OA(Office Action)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약 11~13개월 이다.[7)]

라.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민법 제1491조)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갱신출원은 이전 존속기간 10년의 마지막 해에 행해져야 한다.

2) 상표권의 양도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양도될 수 있으나, 상표권 양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3) 상표권의 사용권(제1489조)

등록된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허여될 수 있다. 사용권 취득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은 사용권 허락자에 의한 이러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사용권 허락자는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권 취득자와 사용권 허락자는 사용권 취득자에게 제기되는 청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마. 심판제도

출원의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결과 행해진 결정 또는 심사의 거절 또는 표장의 실체심사 결과 행해진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선언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상표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7) https://www.ip-coster.com/IPGuides/trademark-russia

바. 비용

(단위: RUR)

구분		관납료
등록	기본	11200
	5클래스 초과시 1 클래스당	700
갱신	기본	20000
	5클래스 초과시 1 클래스당	1000
상표등록증 발급		1400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러시아는 민법에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과학,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으로 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문학, 연극과 뮤지컬, 영화각본, 안무저작물과 판토마임,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영상음악, 그림, 조각,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스토리, 만화 그리고 다른 조형 미술, 무대장치예술, 계획, 묘사, 설계도 형식을 포함한 건축, 도시계획, 공원과 정원, 사진 및 그와 유사한 것, 지리적인 것, 지도, 설계도, 스케치, 지리, 지형 및 다른 과학과 연관된 것,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저작물을 재가공한 파생물 및 편집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1255조, 1259조). 또한, 인터넷 사이트도 번역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등과 같이 동일한 저작물 범주로 분류된다(민법 제1260조 제2항).

다만,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창작자가 없는 민족 창작저작물(민속학), 배타적인 정보성을 가지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보고서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보유한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가 가능하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실연, 방송, 배포 등에 기여하는 등 저작물에 인접해 있는 보조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권리이다(민법 제1304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및 케이블방송 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업자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실시권 등의 설정이 가능하다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까지 유효하고,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익명 저작물은 공표된 해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까지 유효하다(민법 제1281조).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이후 저작물의 사용권은 공유화된다(제1282조).

라. 등록요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보호를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유효한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있다(민법 제1262조)

2.6 기타

가. 영업비밀

영업비밀이 되는 정보란, 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지식활동의 결과 및 전문적인 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 사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①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② 정보의 소유자가 해당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민법 제1465조).

이러한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의 소지자는 동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이를 타인에게 라이선스 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지득하거나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컴퓨터프로그램

언어나 소스코드와 오브젝트 코드를 포함한 형태를 지닌 모든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조합을 포함)에 대한 저작권은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된다(민법 제1261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유효한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된다(민법 제1262조).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사법구제

가. 법원조직

러시아연방의 법원체계는 중재법원(국가경제법원 체제), 공통 관할법원(국가법원) 및 중재재판소로 구성된다. 재판권은 주로 중재법원과 공통 관할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그 당사자들이 대부분 회사나 기업가들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사항들을 취급한고, 후자는 형사 및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러시아는 2013년 7월부터는 러시아 상사법원시스템 내에 새로 발족된 지식재산권 전문 특별법원인 지식재산권법원을 두었는데,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며, 1심 법원 및 상고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나. 대응절차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정부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의 부여 및 법적 보호와 관련된 분쟁,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합병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연방 반독점청의 결정에 대한 판단, 각종 권리의 무효 확인하고, 상고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심리 및 러시아 연방 상사법원이 1심 및 항소심에서 내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산업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면 전용실시권자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소송에서 원고는 침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잠재적인 원고는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최소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특허권자의 이름, 특허번호, 침해자의 이름, 문제 행위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상업 법원 절차법 제65조).[8)]

한편, 예비적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지속적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상품의 가압류 결정 등을 할 수도 있다.

8) ttps://thelawreviews.co.uk/edition/the-patent-litigation-law-review-edition-3/1210579/russia

손해배상에 있어 권리자는 자신의 현실적 손해 또는 이익의 감소분과 관련해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취한 이익을 최소한으로 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 지급했어야 하는 로열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3.2. 행정구제

관련 법규에 따라 특허 발명, 저작물, 상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위조 상품의 몰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벌이 가능하다.

행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경찰 또는 세관 당국에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야 개시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 이를 기초로 침해자에게 행정 처벌 등이 내려진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 및 독점적 활동의 제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은 연방 반독점국에 의해 적발된 부정경쟁행위들이 지식재산의 배타적 권리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규정한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FAS)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거나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벌금을 낼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3. 형사구제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특허 또는 상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행정 규칙 위반의 죄를 물어 형사 조치를 하는 방안과 형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죄를 물어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를 한 법인 관리자 또는 자연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 강제사회봉사, 교정노역 또는 징역형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 대해는 벌금, 몰수 등 행정처벌 가능하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Ⅱ. 벨라루스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3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44
04. 기타 _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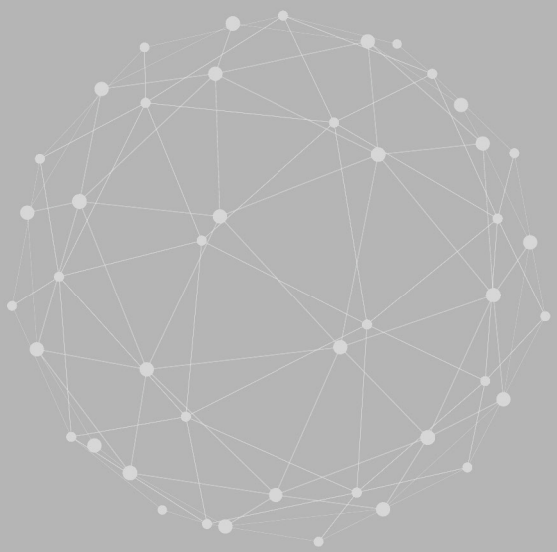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벨라루스 민법의 파트 V는 특허법, 상표 및 저작권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법, 영업비밀에 관한 법 및 상업적 운영에서의 권리 보호 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노하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벨라루스에는 "상표 및 서비스 마크에 관한 법률", "식물 다양성 특허에 관한 법률",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저작권 등의 권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지식재산 보호의 개별 영역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

제품 또는 방법과 관련이 있고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한편, 장치에 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새롭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기간은 5년이다. 실용신안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용신안권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예술적-구조적 해결책에 관한 것은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다.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나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로 보호 가능하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의 대상은 작품의 목적과 장점,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창작 활동의 결과인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으로, 개인적 비영리 권리는 무기한 보호되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생애와 사망 후 50년 동안 유효하다. 저작물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이 외, 러시아는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을 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벨라루스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1.12.25.)	가입	가입	가입 (2002. 1. 18.)	가입	가입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9)]

벨라루스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은 국가 IP정책을 개발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CST), 국립 지식재산 센터(National Center of Intellectual Property), 법원 등이 있다. 국립 지식재산 센터는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직접 담당하고 법령에 명시된 벨라루스 특허 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관이다.

벨라루스 공화국 대법원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위한 상공 회의소는 지적 재산권의 생성, 법적 보호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및 개인 경제적 권리를 규제하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쟁 소송을 해결하는 벨라루스 공화국 대법원의 지적 재산권 소송 사법위원회, 공화당 과학기술 도서관(RLST) 등이 있다.

9)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19/05/article_0008.html

[그림] 벨라루스 국립 지식재산 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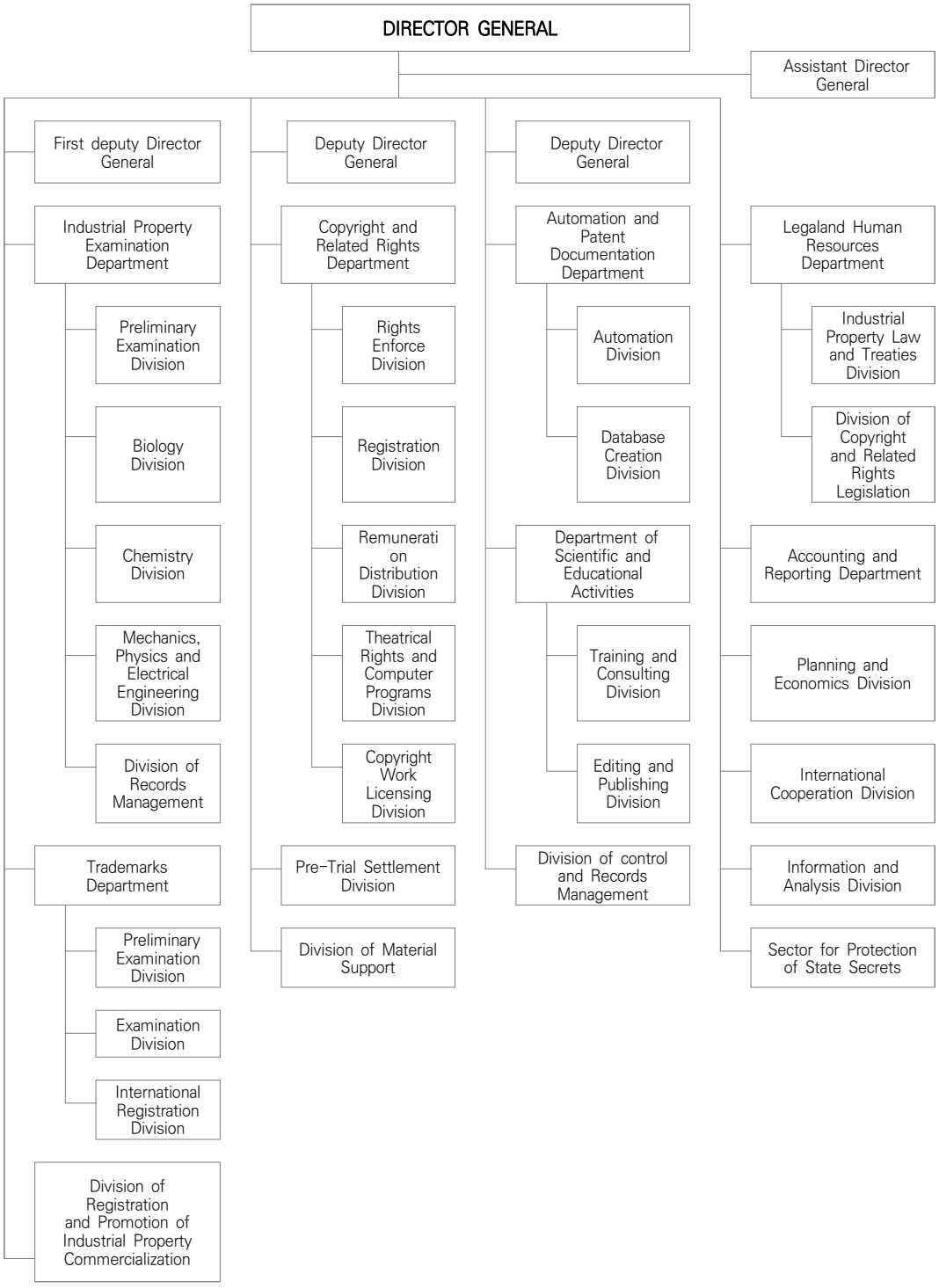

※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은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APO는 지난 1995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8개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한다.[10)]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동의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창설목표로, 이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2019년 11월 1일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11)]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781	105	5,210	15,652	171	298
2015	712	148	4,489	14,328	202	185
2016	573	66	4,652	14,065	202	347
2017	562	90	4,453	14,503	177	406
2018	572	94	4,529	15,613	183	265

10)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11)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BY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및 실용신안

가. 보호대상

1) 특허

제품 또는 방법과 관련이 있고 새롭고 진보적이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발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은 인간 노동의 결과를 의미하고, 방법은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세스, 기술, 방법 또는 제품의 적용뿐만 아니라 개체에 대해 상호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기술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12)]

한편, 발견 및 과학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제품의 외관에 관한 결정과 심미적 요구의 만족을 위한 것, 지적 행동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과 전자 데이터 처리 기계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간단한 표현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고, 식물 및 동물 품종, 집적 회로, 의료 방법 등은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2) 실용신안

장치에 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새롭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의 외관에 관한 결정과 심미적 요구의 만족을 위한 것, 공익 및 도덕에 반하는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나. 등록요건

1) 특허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가 아니라면 새로운 것으로 보고, 당업자에게 명백한 방식으로 선행기술로부터 유도되지 않으면 진보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발명이 산업, 농업, 의료 및 기타 활동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본다(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2조).

12) https://www.ncip.by/en/promyshlennaya-sobstvennost/obekty/patentovanie-v-respublike-belarus/

2) 실용신안

장치에 관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새롭고 산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의 기능의 필수적인 부분이 최신 기술과 다른 경우 신규한 것으로 보고, 산업, 농업, 의료 및 기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취득절차

특허 또는 실용실안 출원서는 ① 발명(실용신안)의 저자 및 출원인, 즉 특허를 받을 자격이있는 사람 및 거주지 또는 위치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 ② 발명을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의 발명에 대한 설명, ③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청구항, ④ 발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 도면 및 기타 자료, ⑤ 요약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출원서는 국립 지식재산 센터(Nat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에 제출한다.

특허청에 출원할 때 또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출원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특허청에 심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다.

심사결과 출원인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특허 허여 결정을 내린다. 특허 부여에 대한 결정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가 발명 등록부에 발명을 등록하기 전에 수정될 수 있다.

발명에 대한 출원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발명 특허권 허가 결정일 전까지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실용신안 출원에서 발명 출원으로의 전환은 실용신안권 허가 결정일 이전, 허가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 제기 만료일 이전에 가능하다.

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특허권은 특허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다. 특허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살충제 또는 농약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실용신안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허청은 실용신안권을 연장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연장에 대한 요청은 실용신안권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특허권의 양도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계약,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될 수 있다(민법 제1357조).

또한, 실시권은 실시권의 성질에 따라서 비배타적 라이센스와 배타적 라이센스로 나눌 수 있다. 배타적 권리 설정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등기의 대상이 된다(벨라루스 민법 제984조).

3) 권리의 실시

실시권은 계약에 의해 부여되거나 강제 실시권 발생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특허권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는 경우,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사용을 원하는 타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에 특허권자에 대하여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발명, 실용신안에 대한 우선일 이전에 어느 누구라도, 해당 발명, 실용신안과 동일한 해결책을 고안하고 선량한 의도로 사용했거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 종전의 사용을 확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선량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가 부여된다.

마. 비용[13)]

1) 특허

(단위: BYR)

구분		관납료
출원	하나의 발명	3,5
	하나 이상의 각 발명에 대해	1,5
특허 출원의 심사	최대 10개의 종속항을 포함하는 하나의 발명	17
	10개 이상의 종속항을 포함하는 하나의 발명	17 10개 이상의 종속항 당 1,5
발명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		3,5
벨라루시 공화국 국가발명 등록부에 등록 및 특허발행		7

2) 실용신안

(단위: BYR)

구분		관납료
출원 및 심사	최대 10개의 종속항을 포함하는 하나의 실용신안	7
	10개 이상의 종속항을 포함하는 하나의 실용신안	7 10개 이상의 종속항 당 1,5
실용신원 출원을 발명 출원으로 전환		3,5
벨라루시 공화국 국가발명 등록부에 등록 및 특허발행		7

13) https://www.ncip.by/en/apellyatsionnyy-sovet/poshliny/

바. 유라시아 특허제도[14)]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연방의 해체 후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통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서를 국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별 공화국의 특허심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라시아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였고,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을 우대하며 출원심사는 러시아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특허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진행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따라서 모든 출원서와 서류는 제출되거나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APO와의 모든 서신(문서)은 등록된 유라시아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EPO 절차와 달리,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할 때 체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 특허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

(3) 출원서가 유라시아 특허청에 의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유라시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고자하는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체약국에서 유라시아 출원서(신청서)는 유라시아 출원서와 동일한 출원일 및 우선일로 국가별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가 출원서로 간주된다.

(4)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하며,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공개일(발행일)로부터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하고,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 특허와 동등하다.

14)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2.2. 디자인

가. 보호대상

물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예술적-구조적 해결책에 관한 것은 산업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다.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산업디자인,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해결책, 건축물(소형 건축적 형상은 제외), 액체, 가스 및 분말물질(dry substances) 등과 같은 불안정한 형상의 주제에 관한 해결책은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나. 등록요건

산업디자인의 우선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신규한 것으로 보고, 제품의 구체적 특징이 창작자의 작업에서 파생된 실질적인 특징이라면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취득절차

산업 디자인 출원서는 ① 산업 디자인의 저자 및 거주지, ② 상품 외관의 특성을 결정하는 산업 디자인의 필수 기능에 대한 완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들, ③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조립도의 일반 도면, ④ 산업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의 등록 절차는 특허와 유사하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

1) 존속기간

산업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산업디자인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2) 양도 및 실시권

산업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에 관해서는 특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비용[15)]

(단위: BYR)

구분		관납료
출원 및 심사	최대 7개 제품 유형을 포함하는 출원	7
	7개 이상의 제품 유형이 포함된 출원	7 7개 초과 유형당 1
연차료	1~3년	3
	4~6년	4
	7~8년	7
	9~11년	8.5
	12년~15년	10
등록		7
갱신		13.5

바. 유라시아 디자인 특허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하고,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15) https://www.ncip.by/odno-okno/poshliny/

2.4. 상표

가. 보호대상[16)]

상표 및 서비스 표지로 보호되는 것은 한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색상 조합, 문자,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 등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나. 등록요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없는 경우, 특정 종류의 상품 표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관습적인 상징이나 용어, 상품의 본질 또는 기술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결정되는 제품 또는 표장의 형태, 상품 또는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 및 공공의 이익, 벨라루스 공화국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포도 나무 또는 주류의 원산지 표시를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17)]

상표 출원서는 ① 출원인 및 출원인의 거주지 또는 위치를 포함하는 출원서, ② 표지, ③ 상표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품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벨라루스의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한, 외국인은 변리사를 통해 공화국에서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심사는 예비 전문 심사와 전문 심사로 이루어진다. 예비 전문 심사에서는 출원서 작성의 정확성, 특허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비 전문 심사가 종료되면 전문 심사에 따라 상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상표 등록 전 공고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벨라루스는 등록 후 상표가 공고되며, 상표 존속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2년~2년 6개월이 소요된다.

16) https://www.ncip.by/promyshlennaya-sobstvennost/obekty/registratsiya-v-respublike-belarus-tm/
17) https://www.ncip.by/promyshlennaya-sobstvennost/obekty/registratsiya-v-respublike-belarus-tm/

라.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벨라루스 민법 제1019조)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양도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양도될 수 있으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행자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독점적 권리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원부에 양도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마. 심판제도

출원상표가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심판위원회(Board of Appeals)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5년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에 대해 누구나 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 비용[18)]

(단위: BYR)

구분	내용	관납료
신청 및 예비 심사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의 한 분류에 대해 상표 등록이 신청된 경우	10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의 2개 이상의 분류에 대해 상표 등록이 신청된 경우	10 (각 클래스 추가당 5)
갱신	상표 등록기간 연장	55
등록증 발급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및 등록증 발급	19
	단체 표장 등록 및 등록증 발급	57

18) https://www.ncip.by/en/apellyatsionnyy-sovet/poshliny/

2.5. 저작권[19)]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대상은 작품의 목적과 장점,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창작 활동의 결과인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으로,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출판 및 미발표 저작물 모두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문학 작품(책, 브로셔, 기사 등), 극적 및 음악적 극적 작품, 안무 및 무언극 작품 및 기타 대본 작품, 음악 작품, 시청각 작품(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필름 스트립 및 기타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 조각, 회화, 그래픽, 석판화 및 기타 미술 작품, 응용 예술 및 디자인 작품, 건축, 도시 계획 및 원예 예술 작품,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얻은 작품을 포함한 사진 작품, 지리, 지도 제작 및 기타 과학과 관련된 지도, 계획, 스케치, 삽화 및 조형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논문, 기사, 보고서, 과학 강의 및 보고서, 논문, 설계 문서 및 기타 과학 작품 등이 포함된다. 아이디어, 방법, 프로세스, 시스템, 방법, 개념, 원칙, 발견,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보유한다.

다. 저작권의 효력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개인적 비영리 권리는 무기한 보호되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생애와 사망 후 50년 동안 유효하다.

라.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은 국립지식센터(NCI)P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저작권 발생의 요건은 아니다.[20)]

19) https://www.ncip.by/avtorskie-i-smezhnye-prava/ob-avtorskom-prave/
20) https://www.ncip.by/en/avtorskie-i-smezhnye-prava/registraciya-kompyuternyh-programm/

2.6 기타

가. 영업비밀

벨라루스 민법은 정보를 구성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정보로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벨라루스 민법 제140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권은 등록, 인증 없이 발생하며, 다른이가 불법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벨라루스 민법 제1010조, 1011조).

나.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지리적 기원에 기인하는 경우 제품이 특정 지리적 위치의 영역에서 생성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에는 원산지 명칭이 포함된다. 벨라루스 공화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법적 보호는 특허 기관에 등록하거나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따라 수행된다.

지리적 표시 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 권한 부여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소유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씩 무제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

다. 식물 품종에 대한 권리[21)]

식물 품종이 새롭고 뚜렷하고 균일하고 안정적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식물 품종에 대한 특허를 국가 지식재산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식물 품종의 이름은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 유사 식물군과의 기존 품종과 이름이 다르며, 식물의 특성, 기원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이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등록부에 품종 등록일로부터 25년동안 유효하다.

21) https://www.ncip.by/promyshlennaya-sobstvennost/obekty/patentovanie-v-respublike-belarus-sorta/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사법구제

벨라루스 공화국의 사법체계는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상업 법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법원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지방군사법원과 재판소간 군사법원
- 주단위, 민스크 시 법원, 벨라루스 군사법원
- 벨라루스 공화국 대법원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보호, 사용 등에 관한 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이 부분의 분쟁 사건은 대법원 지식 재산권 합의부가 심사를 담당한다.[22)]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3)]

3.2. 행정 및 형사구제[24)]

IP 침해에 대해 일반 관할 법원은 벌금 지불 및 침해품의 몰수와 같은 행정책임을 묻거나 징역 등의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2) 벨라루스 공화국 사법체계, 세계법제정보센터, 2013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30019&AST_SEQ=1097&ETC=315

23) https://content.next.westlaw.com/4-501-2152?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__lrTS=20200522073650701&firstPage=true

24) https://www.wipo.int/edocs/mdocs/enforcement/en/wipo_ace_13/wipo_ace_13_6_ppt.pdf

04 기타

벨라루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으로는 1) 민법, 2) 상표 및 서비스 마크에 관한 법률, 3) 식물 다양성 특허에 관한 법률, 4)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5) 저작권 등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Ⅲ. 아제르바이잔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4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54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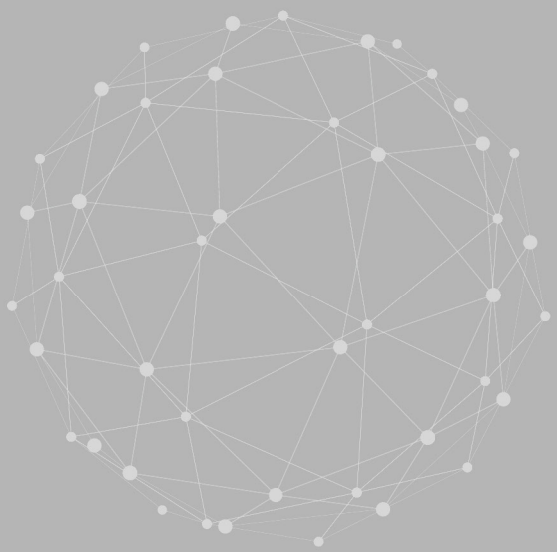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아제르바이잔은 1995년에 WIPO에 가입하였고, 1996년 저작권법, 1997년 특허법, 1998년 상표법을 제정하는 등 대대적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및 유라시안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 등의 국제회의에 가입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현재 1) Copyright Law, 2)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3) Law on Patents[25], 4)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률이 있다. 이들 법률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는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는 없으나, 기술표준특허청(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저작권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심사, 특허 부여, 변리사의 증명, 등록 및 활동에 대한 분쟁은 각 행정 권한 기관의 항소위원회(Commission of Appeal)에서 담당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별 보호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 할 수 있다.

구분	보호기간	내용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상표 (지리적 표시)	10년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형태를 결정하는 예술적 구조적 디자인

25) 동법 제1조는 paten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협의의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patent – title of protection issued by appropriate body of executive power for invention, utility model and industrial design"

이 외, 아제르바이잔은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을 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5. 12. 25.)	가입	가입	가입 (2007. 4. 15.)	가입	가입

가. 지식재산권 보호 실정

복제된 영화, 음악 CD가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산 모조 상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등 아직 지식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화장품인 척 가장하며 유사한 이름, 똑같은 포장용기와 디자인을 사용하여 한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은 아래와 같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

1) 특허넷 도입

우리나라 특허청은 2013년 6월경 몽골(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제르바이잔에 특허넷 기술을 이전, 성공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한·아제르바이잔 특허청 간 협력관계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해당 시스템은 ▲특허 출원·접수의 전자화 ▲선행기술 DB 구축 및 검색의 자동화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특허넷의 핵심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특허넷의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면서도 수요에 맞게 경량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아제르바이잔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는 없으나, 기술표준특허청(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저작권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심사, 특허 부여, 변리사의 증명, 등록 및 활동에 대한 분쟁은 각 행정 권한 기관의 항소위원회(Commission of Appeal)에서 담당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Patent attorney)가 있는데, 변리사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시민이어야 하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영토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변리사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기술표준특허청의 조직도[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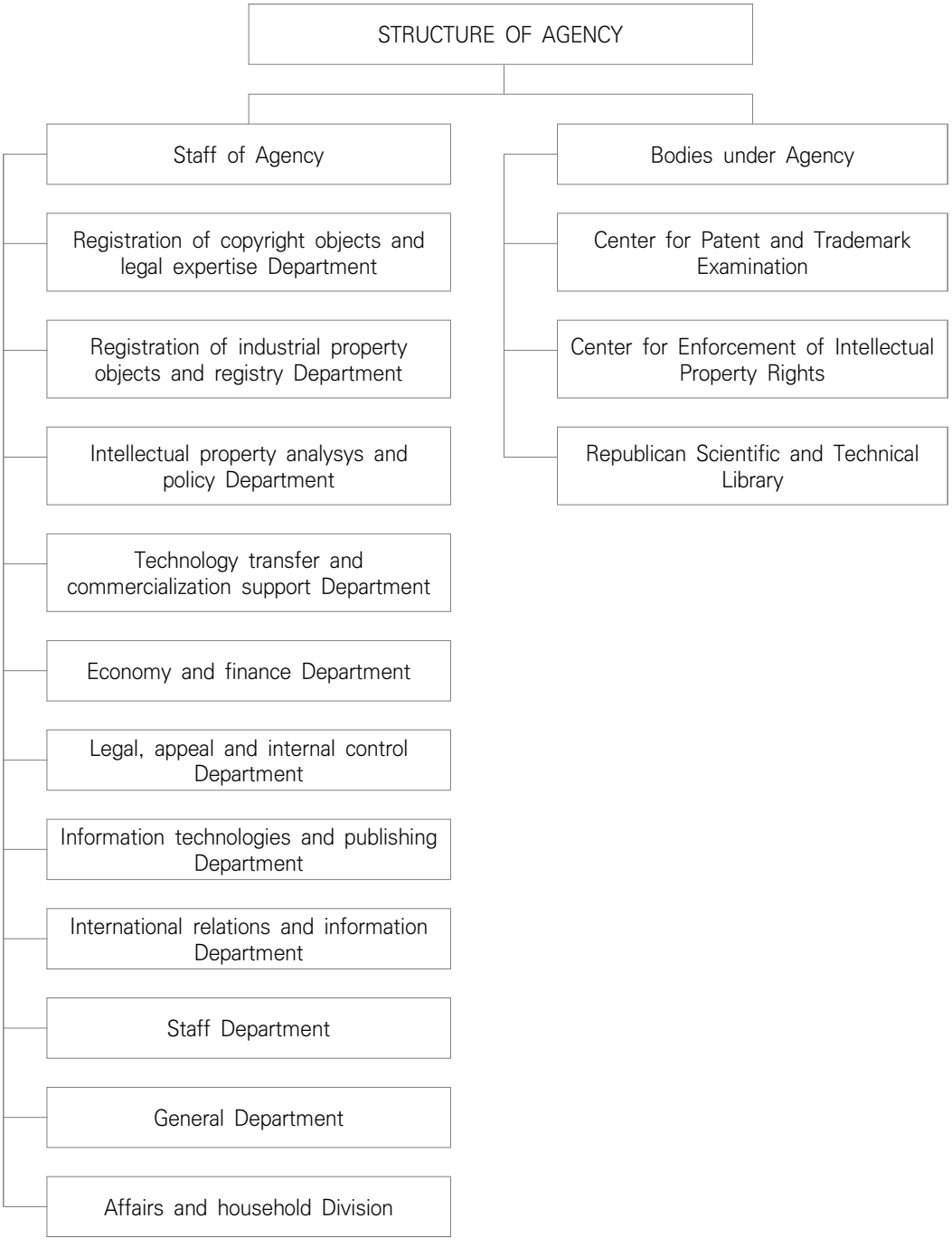

26) http://copat.gov.az/nav/structure

※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은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APO는 지난 1995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8개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한다.[27)]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동의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창설목표로, 이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2019년 11월 1일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28)]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05	-	3,683	10,649	-	-
2015	221	-	2,801	9,305	11	1,160
2016	186	19	2,817	8,747	22	699
2017	237	22	3,077	9,071	114	825
2018	185	16	3,791	9,268	54	535

27)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28)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AZ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

특허는 발명을 그 대상으로 하며, 특허의 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다.

공익, 인본주의 및 도덕의 원칙에 반하는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법 제7조 제8항에서는 과학이론, 수학적 규칙 등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주제가 여러 자연인의 공동 창작 작업의 결과인 경우, 그 사람들을 공동 저작자로 본다. 한편 특허법 제13조는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아제르바이잔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신청자 및 발명자의 이름, 주소 및 시민권을 포함하는 제출 지침
- 우선 출원 또는 PCT 출원의 출원 번호 및 날짜
- 청구 범위, 요약 및 도면이 있는 사양
-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사본
- 신청자가 서명하고 날인 한 위임장 또는 POA의 공증이 필요하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제르바이잔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발명은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신청서를 스스로 또는 변리사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주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기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신청서는 아제르바이잔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형식심사를 한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을 명하며, 보정을 명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실체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각 행정기관의 공식게시판에 이를 공고하고 신청에 관한 자료를 공표한다.

출원인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 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각 행정기관은 특허를 부여한 후 3개월 이내에 공보에 특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출원을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소위원회에 특허부여 거절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특허 등록절차는 대략 2 ~ 3 년이 걸린다.

다. 이의신청

신청 정보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은 입증된 이의 제기를 항소위원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항소위원회는 정보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이의를 수락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항소위원회는 출원인의 답변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에 참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권리가 있다.

라. 특허권의 효력

아제르바이잔 특허의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제약 특허 및 농약 특허의 경우 이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특허가 연장되면 SPC (보조 보호 인증서)가 발급된다.

특허권자는 타인(법인 포함)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특허실시권 설정) 계약 형태로 특허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전 및 설정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를 하여 공적장부인 등록원부(Registra)에 등재하여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 비용[29)]

(단위: AZN)

구분	비용
출원(심사비용 포함)	AZN 20
1 이상의 독립항 마다 추가비용	AZN 7
10 이상의 독립항 마다 추가비용	AZN 7
3년차 연차료	AZN 50 (개인의 경우 AZN 10)

바.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간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허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 유라시아 특허제도[30)]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연방의 해체 후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통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서를 국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별 공화국의 특허심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라시아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였고,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을 우대하며 출원심사는 러시아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특허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진행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따라서 모든 출원서와 서류는 제출되거나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APO와의 모든 서신(문서)은 등록된 유라시아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9) PCT 출원 기준(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guide/en/gdvol2/annexes/az.pdf)
30)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2) EPO 절차와 달리,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할 때 체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 특허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

(3) 출원서가 유라시아 특허청에 의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유라시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고자하는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체약국에서 유라시아 출원서(신청서)는 유라시아 출원서와 동일한 출원일 및 우선일로 국가별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가 출원서로 간주된다.

(4) 특허 출원에 관해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 진행하며,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공개일(발행일)로부터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하며, 즉,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 특허와 동등하다.

2.2. 실용신안

가.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따르면, 실용신안 신청은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로 통합된 하나의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 그룹과 관련되어야 한다. 실용신안 출원의 목적은 생산 수단, 소비재 또는 그 구성 요소, 구성 솔루션 및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기술적 솔루션 일 수 있다(반대로 특허 출원의 대상은 제품 (장치, 공정, 물질, 미생물 균주, 동식물 세포 배양) 및 공정방법)).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나. 실용신안 등록절차 개요

제출 절차가 완료된 후 아제르바이잔 실용신안 출원은 1~3개월 이내에 공식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원회는 공식적인 요구 사항과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으로 보호되는 주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에 대한 데이터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다. 지원자의 선택 요청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의 책임하에 실용신안 특허를 발행한다. 등록비, 출판비 및 첫 번째 보조금을 지불하면 특허 부여 결정이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고 특허가 발행된다.

아제르바이잔의 실용신안 등록 절차는 대략 2년이 걸린다.

다. 출원시 필요서류

아제르바이잔에서 실용신안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신청자 및 발명자의 이름, 주소 및 시민권이 포함된 제출 지침
- 우선 출원 또는 PCT 출원의 출원 번호 및 날짜
- 청구범위, 초록 및 그림이 있는 사양
- 신청인이 서명하고 회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POA(공증 필요)
- 기존 출원에 있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

라. 비용[31)]

(단위: AZN)

구분	비용
출원(심사비용 포함)	AZN 20
1 이상의 독립항 마다 추가비용	AZN 7
10 이상의 독립항 마다 추가비용	AZN 7
3년차 연차료	AZN 50 (개인의 경우 AZN 10)

2.3. 산업디자인

가.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산업디자인의 경우 신규성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다른 나라와 동일하다. 산업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전 산업디자인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각 행정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산업디자인의 신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산업디자인 특허의 최대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즉 기본 기간은 10년이며 추가로 5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31) PCT 출원 기준(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guide/en/gdvol2/annexes/az.pdf)

나.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디자인 등록 절차 개요

제출 절차가 완료된 후 산업디자인 신청서는 공식 심사를 거친다. 응용프로그램이 공식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 부여 결정이 내려진다.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실체심사는 신청자의 선택 요청에 따라 실시되며,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특허는 신청자의 책임하에 발행된다. 신청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산업디자인에 관한 특허는 교부금, 출판비 및 1차 교부금 지급 후 7개월 이내에 발급된다.

아제르바이잔의 디자인 등록절차는 일반적으로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다. 출원시 필요서류

아제르바이잔에서 산업디자인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신청자 및 저자의 이름, 주소 및 시민권과 함께 제출 지침
- 디자인의 일반적인 보기와 가능한 경우 디자인의 전면, 상단, 측면, 후면 및 하단보기가 포함된 그림 (사진, 사본 또는 파일)
- 가능한 경우 디자인의 필수 기능 목록
- 신청인이 서명하고 회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POA(공증 필요)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

라. 비용

아제르바이잔의 디자인 출원에는 국내 및 해외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마. 유라시아 디자인 특허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하고,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2.4. 상표권

가. 상표 출원등록절차 개요

접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접수 공식 통지가 발행된다. 아제르바이잔 상표출원은 약 4~5개월 동안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다. 상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등록비 납부 후 3~4개월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된다.

아제르바이잔 상표 등록의 전체 절차는 대략 12 ~ 18개월이 걸린다.

나. 상표출원시 필요서류

아제르바이잔에서 상표 출원을 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상표 인쇄
- 국제 분류에 따른 상품 및 / 또는 서비스 목록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제르바이잔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음)
- 서명된 위임장, 합법화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제르바이잔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음).

다. 상표 유효기간 및 갱신

아제르바이잔의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마감일 전 12개월 이내에 상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규정된 벌금을 지불하면 마감일 이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한편 소멸된 상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라. 상표권의 양도

상표권자는 타인(법인 포함)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상표사용권설정) 계약 형태로 상표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전 및 설정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를 하여 공적장부인 등록원부(Registra)에 등재하여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 비용[32)]

아제르바이잔의 상표 출원 관납료는 흑백상표를 기준으로 175 AZN(1건/1개류, 약 103 USD), 추가되는 류당 40 AZN(약 40 USD)이고 컬러 상표의 경우 이보다 좀 더 높다. 등록 관납료는 45 AZN(약 27 USD) 이다.

2.5. 저작권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저작권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은 다수의 정부부처 대표로 구성된 반해적행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습검열,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주도하는 등 다소 개선된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다.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가짜 명품이 유통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32) https://www.country-index.com/country_surveys.aspx?ID=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수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 및 WIPO 저작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이다.

다만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식재산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바쿠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Sahil) 역(驛) 주변 상가에 중국의 짝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불법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고 있으나, 세관당국과 업자간 담합 또는 세관당국의 지재권 위반 상품 단속능력의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있다.

3.2. 법적 절차(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특허법 제23조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학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침해로 보지 않는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의 침해사건의 1심 법원은 특허청 심판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서 담당한다.

2심 법원으로는 일반인 및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특허청(AzSTAND),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 그리고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Ⅳ. 우즈베키스탄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6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68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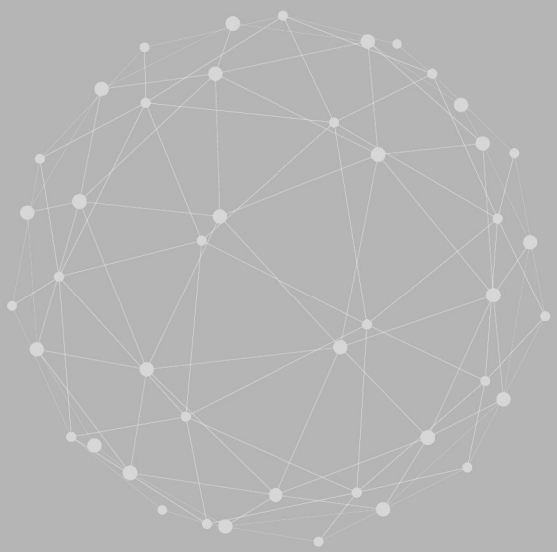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물, 원산지 명칭, 번식 품종, 반도체배치설계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들 지식재산권은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률", “상표, 서비스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	관련법	보호기간	비고
특허권	특허법	20년	형사처벌 규정 있음 과태료 규정 있음
실용신안	특허법	최대 8년	-
산업디자인권	특허법	최대 15년	과태료 규정 있음
상표권	상표법	무제한 (10년마다 갱신)	과태료 규정 있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사후 50년	형사처벌 규정 있음

이 외에,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을 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1.12.25.)	가입	가입	가입 (2006. 12. 27.)	가입	가입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우즈베키스탄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이하 ‘특허법’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특허청을 설치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특허부여를 심사 및 등록을 관장하여 공업재산주제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며, 공식 관보를 게시한다(특허법 제3조). 지식재산청 내에는 “발명 및 실용신안부”, “상표 및 원산지 명칭부”, “산업디자인부”, “지식재산분야 분석개발부”, “지식재산권 준수 모니터링부” 등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특허청 내에 항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항소위원회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사를 한다(제4조).

※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은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APO는 지난 1995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8개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한다.[33)]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동의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창설목표로, 이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2019년 11월 1일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33)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그림] 우즈베키스탄 특허청 구조[34)]

Board members
Department of inventions and utility models
Department of trademarks and appellations of origin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s
Department of Analysis and Development of the Sphere of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of Monitoring Compliance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Licensing, Diploma and Patent Documentati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al and control department
Chief HR Specialist
Legal department
Press secretary
Financial and economic departm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dministrative department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35)]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345	223	5,119	6,601	366	47
2015	288	219	4,584	6,179	406	22
2016	353	202	6,457	5,762	358	109
2017	357	196	6,750	6,503	321	22
2018	470	180	7,412	7,056	307	26

34) http://www.ima.uz/ru/about/projects/
35)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UZ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

발명의 대상은 장치, 수단, 물질, 미생물의 변종, 식물 및 동물의 배양, 새로운 목적을 위해 과거 알려진 장치, 방법, 물질, 균주 등을 응용한 시도 등이 될 수 있다(제6조).

과학 이론, 수식, 조직 또는 관리방법,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정 또는 일정 또는 규칙, 지적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알고리즘/컴퓨터프로그램, 건물 또는 토지 계획, 미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외관, 집적회로, 품종, 공익, 인류의 원칙, 도덕성에 반하는 것은 등록가능한 발명이 아니다(제6조).

나. 등록요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발명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가 발명을 출원전에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공개의 특정조건 하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며, 입증책임은 출원인에게 있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특허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발명을 양도받은 사람, 타인에게 고용계약을 통해서 발명을 하도록 한 사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특허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2) 대리인

대리인에 의한 출원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국외 법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산업재산권의 특허에 관한 사안을 수행하고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특허 출원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5조)

- 발명자, 출원인 정보
- 발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본 발명의 필수 특징을 표현하고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청구항
- 발명의 초록

특허출원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경우 앞선 출원의 출원일이 변경된 출원의 출원일이 된다.

특허출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자는 출원한 내용의 본질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4) 출원서 제출 후 심사 절차

출원서가 제출되면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가) 형식 심사(제22조)

형식적 심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실시한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2개월 이전에 수행될 수도 있다. 형식 심사는 출원된 내용이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검토 결과에 따른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항소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나) 실질 심사(제23조)

특허청은 출원 수수료를 낸 경우 실질 심사를 실시한다. 특허수수료는 특허출원 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이후 3개월 내 내야 한다. 기한을 도과한 경우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 내용이 특허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적인 경우 특허부여를 거절한다. 검토 결과에 따른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발송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시 항소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5) 등록

특허청은 특허부여를 결정한 후 국가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 공식 관보를 공표한다. 특허부여는 정보 공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2~3년이 소요된다.[36]

라. 특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법률에 의해 따로 정하는 경우 특허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간 연장될 수 있으나 유효성을 연장하는 절차는 특허청에 의해 따로 정해져야 한다.

2) 특허의 보호범위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따라 판단한다.

3) 특허 침해

특허권의 적용 대상으로 제작된 물품의 준비, 적용, 수입, 판매의 청약, 판매,

기타 특허받은 산업재산권 내용의 적용과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유통 또는 보존의 소개 등은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다만 다음 내용은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또는 수송수단에 포함되는 장치의 사용
- 과학 연구행위 또는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재산 주제를 포함하는 수단의 실험
-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수단이 자연 재해, 재해 전염병 및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수단이 합법적으로 민간유통에 도입된 경우
- 비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화학자가 의약품을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경우

36) https://mspcorporate.com/objects/patent-uzbekistan.htm

4) 실시권 부여 청구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는 경우, 특허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보호된 산업재산 과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의무적인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심판을 통한 등록 무효와 이에 대한 항소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제기에 따라 특허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은 언제든지 법적 보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바. 유라시아 특허제도[37)]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연방의 해체 후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통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서를 국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별 공화국의 특허심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라시아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였고,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을 우대하며 출원심사는 러시아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특허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진행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따라서 모든 출원서와 서류는 제출되거나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APO와의 모든 서신(문서)은 등록된 유라시아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EPO 절차와 달리,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할 때 체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 특허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

37)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3) 출원서가 유라시아 특허청에 의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유라시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고자하는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체약국에서 유라시아 출원서(신청서)는 유라시아 출원서와 동일한 출원일 및 우선일로 국가별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가 출원서로 간주된다.

(4) 특허 출원에 관해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 진행하며,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공개일(발행일)로부터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하며, 즉,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 특허와 동등하다.

2.2.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절차, 권리의 효력,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 등록 취소 절차 등은 모두 특허권과 유사하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보호기간은 특허청에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 취득까지는 약 1~2년이 소요된다.

2.3. 디자인

가. 보호대상(디자인)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디자인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법”(이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특허법에는 디자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음은 산업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인쇄물
- 건축 주제(작은 건축물의 부품), 산업, 수력 및 기타 고정 구조물
- 액체, 기체와 같은 부서지기 쉬운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로 만들어진 불안정한 주제
-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는 디자인
- 공익, 인류 원칙 및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나. 등록요건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새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은 등록 가능하다.

다. 취득절차

1) 산업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는자

디자인의 저자는 산업디자인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디자인을 양도받은 사람, 타인에게 고용계약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도록 한 사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산업디자인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2) 대리인

대리인에 의한 출원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국외 법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산업재산권의 특허에 관한 사안을 수행하고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출원

산업디자인권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

- 산업디자인의 제작자, 출원인
- 산업디자인의 외부 모양에 대한 전체 세부 그림을 제공하는 모형 또는 이미지
- 제조된 디자인의 일반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도면, 그 기능, 특성 또는 공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도면
- 모든 필수 기능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설명.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자는 출원한 내용의 본질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4) 출원서 제출 후 심사 절차

출원서가 제출되면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가) 형식 심사(제22조)

형식적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실시한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2개월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형식 심사는 출원된 내용이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검토 결과에 따른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발송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시 항소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나) 실질 심사(제23조)

특허청은 출원 수수료를 낸 경우 실질 심사를 실시한다. 수수료는 출원 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 이후 3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도과한 경우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 내용이 산업디자인권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은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해 권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적인 경우 권리 부여를 거절한다. 검토 결과에 따른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발송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시 항소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5) 등록

특허청은 권리부여를 결정한 후 국가 특허청에 산업디자인를 산업디자인 등록부에 등록하고 공식 관보를 공표한다. 특허 부여는 정보 공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

1) 보호기간

산업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특허청에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산업디자인권의 침해

산업디자인의 적용 대상인 물품의 준비, 적용, 수입, 판매의 청약, 판매, 기타 특허받은 산업재산권 내용의 적용과 권리로 보호 될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유통 또는 보존의 소개 등은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다만 다음 내용은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국내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또는 수송수단에 포함되는 장치의 사용
- 과학 연구행위 또는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재산 주제를 포함하는 수단의 실험
-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수단이 자연 재해, 재해 전염병 및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수단이 합법적으로 민간유통에 도입된 경우
- 비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화학자가 의약품을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경우

3) 사용권 청구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는 경우, 특허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보호된 산업재산 과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의무적인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

마. 심판을 통한 등록 무효와 이에 대한 항소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제기에 따라 등록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면 디자인권은 언제든지 법적 보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바. 유라시아 디자인 특허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하고,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2.5. 상표

가. 보호대상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를 의미한다. 상표는 모든 기호, 특히 사람의 이름, 그림, 문자, 삼차원 이미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등록요건

우즈베키스탄 “상표 및 서비스표 원산지표시 법”(이하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아니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상표법에는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를 구별하지 않고 거절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상표법 제10조)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상표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특허청은 형식 심사를 거친다. 형식 심사는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형식 심사가 끝나면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내용은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예를 들면 거절이유 해당여부)에 대한 것이다.

심사 전 과정에서, 출원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이 요청한 추가 자료는 출원인에게 자료요청이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출원인이 놓친 기한은 기한이 만료된 후 2 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청에서 갱신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상표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알린다. 우즈베키스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8~10개월이 소요된다.

라. 상표권의 효력

1) 보호기간 및 갱신

상표권은 등록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유효기간 마지막 해(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하여 10년씩 연정할 수 있다.

2) 등록으로 인한 효력

상표의 소유자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처분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상표권 인증서에 표시된 상품과 관련하여 유효하며 특허청 공식 관보에 게시된 날부터 등록 유효기간 내에 효력이 있다.

상표 및 서비스표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표장을 사용하여 제조, 적용, 수입, 판매 제안, 판매, 기타 공공 유통 또는 보관에 활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마. 심판제도

특허청이 내린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후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바. 비용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관납료는 UZS 5,352,000(1건, 1개류)이며 1개류 추가당 UZS 1,784,000가 추가된다. 등록비용(첫 10년간 유지비 포함)은 UZS 9,812,000이고, 1개류 추가당 UZS 446,000이 추가된다. 공고비용은 UZS 780,500이다.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되는 권리다. 우즈베키스탄의 "저작권 및 관련 법(이하 '저작권법')"은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공연, 음반, 방송 및 케이블 방송 기관의 전송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저작권법은 표현의 방법과 상관없이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인 과학, 문학, 예술작품에 권리를 부여하며 구체적으로 서면, 구두 발언(연설 등), 음악 및 비디오 녹음, 사진, 그림, 조각 모델과 같은 객관적인 형태를 갖춘 표현을 보호한다.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문학 작품, 극작품, 음악의 작곡, 뮤지컬, 연극, 안무, 무언극, 시청각 작품, 예술품, 조각품, 미술작품, 건축문서, 도시계획 정원예술, 지형/지질 관련 지도 및 계획,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우즈베키스탄 저작권법이 들고 있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이다.

나. 저작권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명시되지 않으면 원본 또는 사본에 저자로 표시된 자가 저자로 간주된다. 익명 출판의 경우 저작의 저자가 자신이 저자임을 선언할 때까지 출판사의 대표에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실현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다. 등록요건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 저작권의 효력

1)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자의 사망 후 50년간 유효하다. 저작인격권의 일부인 저자로 인정받을 권리, 저자 이름에 대한 권리, 저작자의 평판 보호에 관한 권리는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2) 효력

가) 영리적 권리(저작재산권)

저자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저작자의 독점배타적 권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현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저작물의 복제
-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한 원본 또는 저작물의 배포
- 작업 공개
- 원본 또는 작업 사본을 대여
- 저작물 사본의 수입
- 유선 또는 기타 유사한 시설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을 발표
- 공공전시
- 개작

나) 비영리적 권리(저작인격권 등)

다음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의 귀속여부와 무관하게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저작물의 저자로 인정받을 권리
- 저자의 선택에 따라 익명으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있는 권리 (저자 이름에 대한 권리)
- 작업을 공개하거나 공개 할 수있는 권리
- 저자의 명예와 공로를 훼손할 수 있는 경멸적 시도로부터 제목을 포함한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저작자 평판 보호에 대한 권리).
- 일부 요건을 갖추어 저작물 공개를 철회할 권리

3)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의 행위(저작권법 제25 내지 33조) 등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적 사용을 위한 작품의 복제
- 과학적, 연구적, 논증적, 출판물 형태의 신문/저널의 복제를 포함하여 인용목적이 정당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원문 및 그 번역의 인용

- 도서관, 기록 저장소에서 발췌, 저작물 보존 목적 등 비영리적 목적의 복제
- 무료로 입장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비상업적 목적의 전시
- 법원, 행정 절차의 목적을 위한 사용
- 방송 녹음(녹화)를 위한 단기 기록
- 컴퓨터프로그램 정당한 사용자의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인 용도의 복제 개조

4) 사용권, 양도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특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사용권 부여의 경우 계약에 따로 명시되지 않으면 비독점적인 사용권으로 간주된다.

2.6. 원산지 명칭

우즈베키스탄 상표법에 따라 특정제품이 특정 지리적 원산지 및 명성(특정 품질 또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산지 명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등록된 명칭의 오용 또는 모용으로부터 권리자의 상품을 보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보증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 지역의 모든 생산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집단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2.7.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e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38)]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1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보호 대상은 집적회로 그 자체가 아니라 집적회로의 물리적 배열이다. 반도체 배치설계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치설계가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여야 하며 반도체 산업에서 평범하지 않아야 한다(독창성과 창의성).

38) https://www.guidetobusinessinspain.com/en/6-propiedad-industrial-e-intelectual/6-6-topografias-de-productos-semiconductores/

2.8. 번식 품종 보호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번식 업적과 관련된 품종의 발견 성과를 보호한다. 보호 대상이 되는 품종은 새롭고, 과거에 알려진 품종의 번식 성과와 분명히 달라야 하며, 동질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0년동안 유효하고 포도, 나무, 장식, 과일 작물의 경우 25년간 보호된다. 권리자의 요청으로 연장가능하나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민사적 구제

가. 우즈베키스탄의 법원 체계[39][40]

우즈베키스탄의 분쟁해결 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경제법원, 중재원 등

이 있으며, 이 중 중재원(2005년 6월 설립)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일반법원 및 경제법원의 1심은 구 또는 시 단위 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주 법원이 담당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제기한다.

경제법원은 경제 관련 분쟁을 전속하여 심판하는 우즈베키스탄의 특유의 사법기관이다. 1심은 단독판사가 진행하고,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장 혹은 상고장을 접수해야 한다. 소장 접수 후 1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

나. 민사절차를 통한 침해 구제

저식재산권자는 침해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권리인정
- 침해 이전에 존재하는 지위의 회복, 침해 행위의 제거
- 손해배상

다만 여전히 지식재산 소송 관련 균일한 사법 관행이 부족하고, 법원 결정을 집행에 관하여 정부 당국의 비효율적인 업무 태도로 인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9)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EC1C6316EB39577DB0771C758451D47B.node02?work_key=002&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270000-201100008

40)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file_20131004220255861_0&rs=/viewer/result/202010

3.2. 형사적 구제

우즈베키스탄 형법에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49조), 벌금형, 6개월 이하의 징역형,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3년 이하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침해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화해 후 피해를 보상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형법 제66-1조).

3.3. 행정적 구제

2019년부터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원산지 명칭 회사명, 저작권 침해의 경우 행정책임이 도입되었다. 다만 벌금금액이 미미하고 손해액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저작물 및 관련 권리의 해적판 사본, 제조 및 복제에 사용된 재료 및 장비, 기타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기타 도구는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몰수된다. 몰수된 물품은 파기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V. 우크라이나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8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89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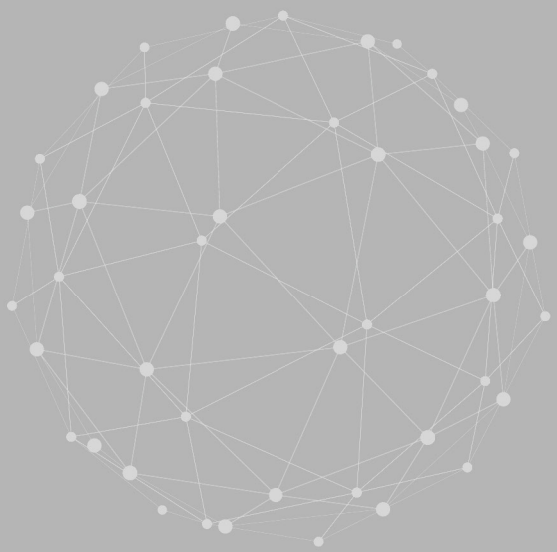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기타 특별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동일한 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실용신안(utility model)에 대해 보호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은 제품 또는 그 일부의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것이면 등록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상표권은 법에 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등록가능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여 권리를 고지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저작재산권)는 저자의 사후 70년 동안 지속되며,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없이 보호된다.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처음 녹음 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음반 제조업자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나 영상이 최초 공개된 때로부터 50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음반이나 영상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출판 또는 녹음시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첫 방송시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협정은 특허권 관련 파리 협약 및 PCT,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등이 있다.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41]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관련기관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감독 기능을 하는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Agriculture)[42], 지식재산권의 등록, 보호, 인수 등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특허청, 신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를 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부(Ukrainian Customs Reg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에 등재하고, 해당 상품들의 수입·수출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확정·증명되었을 경우, 침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대통령 소속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ntimonopoly Committee), 경제개발무역농업부 소속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권실(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도 있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43]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457	2,356	25,355	26,072	4,962	3,516
2015	2,271	2,226	36,339	22,403	4,294	3,487
2016	2,233	1,862	45,880	23,634	5,382	3,632
2017	2,283	1,764	47,531	24,494	4,954	3,393
2018	2,107	1,861	51,195	25,323	5,261	2,905

41)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20837/view.do?seq=72
42) 상세 조직도는 홈페이지 참고(https://www.me.gov.ua/Documents/Detail?lang=en-GB&id=682cbbd5-962c-48cf-b52e-256899160800&title=TheStructureOfTheCentralAdministrativeOffice)
4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UA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일한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실용신안(Utility model)의 경우에는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발명은 제품(장치, 물질) 또는 모든 기술 분야의 방법(프로세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나. 등록요건

발명은 선행기술의 일부가 아니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행기술은 특허출원일(우선일)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특허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발명은 당업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산업 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우크라이나는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다른 파리조약 가입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하면 해당 출원은 파리조약 가입국에 최초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또한 PCT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은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서 특허등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즉 PCT 출원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단계 진입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신청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Ukrain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은 특허출원을 접수하면 2~3개월간 형식심사를 한다. 그리고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하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질심사를 한다. 실질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등록이 된다. 특허출원 및 모든 관련 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된 우크라이나 특허 변호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년 ~ 3년 정도이다.

라.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가 의약품이나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인 경우에는 관련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가 발급된다.

마. 비용

특허출원시 수수료는 청구항 3개까지는 대략 35유로이며, 추가되는 청구항당 약 4유로이다. 특허성에 대한 실질심사 청구 수수료는 하나의 독립청구항일 때 약 125유로이며, 추가되는 독립청구항마다 125유로이다. 특허등록료는 약 100유로이다.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연차료는 아래와 같다.[44]

(단위: EUR)

특허	
1~2년차	13.00 (매년)
3년차	17.00
4년차	21.00
5년차	25.00
6년차	29.00
7년차	33.00
8년차	38.00
9~14년차	88.00 (매년)
15~20년차	158.00 (매년)

44)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News/Ukraine-guide_en.pdf

2.2. 실용신안

가. 보호대상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은 제품(장치, 물질) 또는 모든 기술 분야의 방법(프로세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나. 등록요건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실용신안이 산업 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신청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PTO)은 출원을 접수하면 2~3개월간 형식심사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용신안은 무심사 주의이므로, 출원인이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이 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용신안 등록 절차는 약 1년이 걸린다. 출원 및 모든 관련 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된 우크라이나 특허 변호사를 통해 출원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다른 파리조약 가입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하면 해당 출원은 파리조약 가입국에 최초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또한 PCT 조약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은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서 등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즉 PCT 출원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단계 진입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마. 비용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는 다음과 같다.[45]

(단위: EUR)

실용신안	
1~2년차	13.00 (매년)
3년차	17.00
4년차	21.00
5년차	25.00
6년차	29.00
7년차	33.00
8년차	38.00
9~10년차	88.00 (매년)

2.3. 디자인

가. 보호대상

디자인은 제품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및/또는 재료 및/또는 마감에 의해 결정되는 제품 또는 그 일부의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나. 등록요건

디자인(industrial design)은 새로운 것이면 등록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디자인이 출원된 날(또는 우선일) 이전에 그 주된 특징이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새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은 출원일 전에 접수된 모든 출원의 내용을 살펴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 출원일 전에 철회되거나 등록이 거절된 것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45)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News/Ukraine-guide_en.pdf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디자인의 신규성 유예기간은 우선권이 청구될 경우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보공개 전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청서 또는 우선권 부여일로부터 12개월이다. 우크라이나는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다른 파리조약 가입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하면 해당 출원은 파리조약 가입국에 최초 출원한 날과 동일한 날에 우크라이나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 출원시 디자인이 실시된 제품의 외관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의 이미지들(제품 자체 또는 그 모델이나 그림)을 제출해야 하며, 그와 함께 출원 명세서와 도면 등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된 우크라이나 특허 변호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법률상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실질심사가 없다.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디자인 등록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바. 비용

등록 디자인에 대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는 다음과 같다.[46]

(단위: EUR)

디자인	
1~2년차	5.00 (매년)
3년차	9.00
4년차	13.00
5년차	20.00
6년차	31.00
7년차	39.00
8년차	52.00
9년차	65.00
10~12년차	78.00 (매년)
13~15년차	144.00 (매년)

46)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News/Ukraine-guide_en.pdf

2.4. 상표

가. 보호대상

상표는 한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표시로서, 단어(사람의 이름 포함), 문자, 숫자, 그림, 색상 (및 색상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은 상표로 보호될 수 있다. 맛이나 냄새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나, 만약 소리가 음악 표기법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나. 등록요건

1)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

아래와 같은 표장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가) 다음의 표장(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이 될 수 있는 표장

(a)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표장

(b) 특히 잘 알려진 표장과 같이,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국제 협약에 의해 등록 없이도 보호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표장

(c) 동일 유사한 표장이 출원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알려져 있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표명

(d)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 (와인과 주류 포함)

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우크라이나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해당 디자인을 복제하는 표장

다) 저작권 보유자 또는 법적 승계자의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알려진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제목 또는 이들의 인용문 및 문자를 복제 하는 표시

라)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알려진 사람의 이름, 가명, 초상화 및 팩스를 복제하는 표시

2)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표장

우크라이나 상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장은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가) 공공질서, 인간성 및 도덕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나) 아래와 같은 표현 또는 모방

(a) 주 무기 방위, 깃발 및 기타 주 상징 (엠블럼)

(b) 국가의 공식 명칭

(c) 국제 정부 기구의 엠블럼 및 약식 또는 전체 이름

(d) 제어와 보증을 표시하는 공식 표시, 분석 표시, 봉인 표시

(e) 상 및 기타 명예 훈장

다) 일반적으로 고유한 특징이 없고 사용 결과 고유한 특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라) 특정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시로만 구성되는 경우

마) 애플리케이션의 상품 및 서비스를 기술하는 표시나 데이터로만 구성 된 경우, 특히 표시나 데이터가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품질, 구성, 수량, 속성, 목적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표시나 데이터가 상품 및 서비스가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바) 대중으로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호 및 용어로만 구성된 경우

아) 상품의 자연적인 상태만을 반영하거나 특정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에서 유발되거나,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인 경우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등록받고자 하는 표장의 이미지와 설명,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등을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Ukrainian PTO)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형식심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가 우크라이나 상표법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그 후 출원된 표장이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 심사(동일, 유사성 판단)가 이루어지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된다. 마드리드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해도 된다. 외국인이 상표출원을 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출원 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라. 상표권의 효력

등록된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마. 비용

상표출원 비용은 한 건의 흑백 표장으로 상품/서비스류 1개류를 지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230유로가 소요된다.[47]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로서, 문학 및 예술작품(글, 구술, 안무, 음악, 시청각 작품, 사진, 응용예술, 건축물, 번역, 편집 등 2차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아이디어, 프로세스, 작동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학, 문학 및 예술 공연자, 음반 및 영상 제조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으로 보호된다.

우크라이나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소설, 저널리즘, 과학, 기술 또는 기타 성격의 문학 작품 (책, 브로셔, 기사 등)
- 연설, 강의, 연설, 설교 및 기타 구술 작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 드라마, 뮤지컬 드라마 작품, 판토마임, 안무 및 기타 작품
- 시청각 작품

47)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News/Ukraine-guide_en.pdf

- 미술 작품
- 건축, 도시 건설, 정원 및 공원 예술 작품
-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작품을 포함한 사진 작품
- 장식 직조, 도자기, 조각, 주조, 예술 유리, 보석류 등의 응용 예술 작품
- 일러스트레이션, 지도, 레이아웃, 도면, 스케치, 지리, 지질학, 지형, 엔지니어링, 건축과 관련된 플라스틱 작품 등
- 파생물
- 통합된 부분으로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재의 선택, 편집, 배열을 포함한 창의적인 작업의 결과물로서의 작품 컬렉션, 민속 버전 컬렉션, 백과사전 및 선집, 일반 데이터 컬렉션 및 기타 복합 콘텐츠
- 우크라이나어 및 기타 언어 자막을 외국 시청각에 더빙, 사운드트랙, 추가하기 위한 번역문

한편 아래에 나열된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주 당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위(법, 법령, 결의, 결정 등) 및 공식 번역본
- 공공 기관이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폐, 엠블럼 등의 국가 상징
- 오늘의 뉴스 또는 일반 언론 정보의 성격을 지닌 기타 사실에 대한 알림
- 법률에 의해 설정된 기타 저작물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 할 독점적 권리
- 저작물의 오용을 방지 할 수있는 권리 (사용 금지 포함)
- 법률로 정한 지적 재산권의 기타 재산권.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여 권리를 고지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저작재산권)는 저자의 사후 70년 동안 지속되며,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없이 보호된다.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처음 녹음 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음반

제조업자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나 영상이 최초 공개된 때로부터 50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음반이나 영상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출판 또는 녹음시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첫 방송시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출판(출시)
- 어떤 방식 또는 어떤 형태로든 복제
- 번역
- 처리, 적응, 배열 및 기타 유사한 변경
-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선집, 백과사전 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
- 공연
- 판매, 임대 (임대) 등
- 사본, 번역 사본, 변경 등

합법적으로 출판 된 저작물의 인용문 또는 연구용 출판물,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음반 및 비디오 그램의 삽화로, 관습에 따라 차용 출처와 저자 이름 (해당 출처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을 표시한 경우나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등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자라는 사실, 공개(출판)되었다는 사실, 공개(출판) 날짜,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인증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서비스(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 SIPS)에 신청을 하여 저작권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 등록되면 해당 저작물이 기재된 날짜에 창작되었다는 사실과 등록자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면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이 되며, 약 2~4 개월 정도 소요된다.

마. 비용

저작권 등록신청 수수료는 개인은 약 3유로, 법인체는 약 8유로이다.[48]

48)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News/Ukraine-guide_en.pdf

2.6 기타

가. 영업비밀

우크라이나 민법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즉, ① 비밀성(공중이 알 수 없고, 쉽게 접근 할 수 없어야 함), ② 상업적 가치(정보가 공개되면 가치가 손실될 것), ③ 합법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비공개 계약, 고용 계약의 비공개 조항, 문서 '기밀'표시, 제한적 직원의 정보 액세스, IT 보안 조치 등)이 요구된다.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은 기술, 조직, 상업, 산업 또는 기타 성격의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의 설립 문서
- 세금 확인 목적 및 관련 지불 문서에 필요한 정보
- 직원 및 직원 수, 급여 및 공석(job vacancies) 수에 대한 정보
-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 직원의 안전 요구 사항 위반에 대한 정보, 소비자 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에 대한 정보
-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서
- 회사 관계자의 다른 사업체 참여에 대한 정보.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그 보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식 등록절차는 없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한 보호된다.

우크라이나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불법적인 정보의 수집, 영업비밀의 공개, 영업비밀 공개를 유인,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은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나.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반적으로 농산물, 식품류, 와인 및 주류, 공산품에서 사용되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표시와 적격표시 두가지 종류가 있다.

단순표시(simple indication)는 지리적 원산지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이미지 등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made in Ukraine”과 같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알려주는 장소의 명칭이 될 수 있다. 단순표시의 법적 보호는 그 사용을 기반으로 하며, 사실이 아니거나(허위)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단순표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적격표시(qualified indication)는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일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그 장소에서 유래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지리적인 장소 이름으로, 이러한 상품은 해당 장소의 자연조건에 따라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되거나, 이러한 자연조건과 함께 그 장소 특유의 인적 요소와의 조합에 의해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반면 지리적 표시는 해당 장소 특유의 자연조건, 인적 요소 또는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 특별한 속성, 명성 기타 특성을 갖는 지리적 장소를 직간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나 이미지를 말한다. 적격표시는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PTO)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사법구제

우크라이나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은 개인 또는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 법인만을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상사법원에서 담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법원도 관여한다. 소송을 하기 전에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본안 소송 진행 중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통상 다투어지는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침해금지청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특허나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표권에 대한 불사용 취소소송(조기 종료), 우크라이나에서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소송,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의 무효,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PTO)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행정법원 관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이다.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 관련 기관으로는 우크라이나 세관, 대통령 소속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Antimonopoly Committee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지식재산권 서비스(SIPS; Stat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of Ukraine)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 재정국의 관세청과 각 관할 세관은 특히 국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담당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위조품)이 우크라이나로 수입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재산권을 세관등록부(Customs Registry)에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일단 제품이 등록되면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세관 경계선을 넘어 위조품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세관 또한 사전 신청 없이 수출입되려는 위조품을 적발한다. 이렇게 되면 3 영업일간 위조품의 수출입이 보류되고, 지식재산권자에게 통지가 발송된다. 이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자는 해당 지식재산권이 세관등록부에 등록되도록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류되었던 위조품에 대한 수출입이 진행된다.

세관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리적 표시, 특허, 실용신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이다. 세관등록부에 등록하는데는 약 30일이 소요된다.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으나, 만일 위조품의 수출입이 보류되어 당국에 물건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세관등록부에 등록한 권리는 6개월 또는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존속되어 있는 중에 연장신청을 하면 향후 6개월 또는 12개월간 기간이 연장된다.

세관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신청서
2) 위임장(공증 및 인증된 원본)
3) 권리 등록원부(공증 및 인증)
4) 식별 자료
5) HS 코드
6) White/Black List
7) 권리자 혹은 현지 대리인 연락처
8) 기타

- 우크라이나에 공식 루트로 수입되는 관련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에 대한 설명(세관 검사 시 필요)
- 수입되는 진정상품 특정 기능에 대한 설명
- 상품의 제조업체 정보(회사 명칭 및 주소)
- 우크라이나 공식 수입업체 및 유통정보(회사 명칭, 주소, 기타 세부사항 등)
- 공식 수입채널에 대한 정보(주요 화물업자, 원산지에서의 운송방법,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세관의 사무소)
- 최근 진정상품의 시장 가격
- 비공식 또는 불법 수입업자 리스트(선택사항), 위조품 식별방법(선택사항)

세관에서의 단속절차는 아래와 같다.[49]

	직권 보호 조치	권리자 요청에 따른 조치
절차	- 상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러 제보(권리자의 제보에 의해 세관에서 직권으로 위조 의심물품에 대하여 단속이 가능함 - 직권단속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에 따라 결정됨 진행 절차 ▶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을 진행할 경우,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하며, 권리자(또는 대리인)에게 통보서, 물품 사진, 기타 정보를 송부함 ▶ 권리자는 압류 물품이 위조품임을 확인하고 세관에 압류 및 폐기 요청을 해야함 ▶ 세관은 관세규칙위반에 관한 규약에 대한 절차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사건의 침해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함	- 상표 또는 타 지재권이 세관에 등록된 경우 세관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있는 모든 무단 선적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 해야할 의무가 있음 진행 절차 ▶ 세관은 침해 물품을 적발하면 통관을 중지하고 침해 사실에 대하여 권리자(또는 대리인)에게 통보서, 물품의 사진, 기타 정보를 송부함 ▶ 권리자는 압류 물품이 위조품임을 확인하고 세관에 압류 및 폐기 요청을 해야함 ▶ 세관은 관세규칙위반에 관한 규약에 대한 절차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사건의 침해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함 ▶ 수입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폐기 절차 진행 가능함
침해 판명 시 필요 서류	- 권리자 감정서 - 법의학연구소(Forensic institution)에서 작성된 감정서	- 권리자 감정서 - 법의학연구소(Forensic institution)에서 작성된 감정서
담보 제공 여부	불필요	불필요
수입업체 소명 기한	압류일자로부터 10일 이내	압류일자로부터 10일 이내
세관 통보 후 답변 기한	압류일자로부터 10일 이내	압류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답변 기한 연장 여부	가능(최대 10일)	가능(최대 10일)
관납료	없음	없음

49) 「2019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등록 가이드북」 관세청,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http://www.e-tipa.org/wp/wp-content/uploads/2014/09/2019-%ED%95%B4%EC%99%B8-%EC%84%B8%EA%B4%80-%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EB%93%B1%EB%A1%9D-%EA%B0%80%EC%9D%B4%EB%93%9C%EB%B6%81%EC%9C%A0%EB%9F%BD.pdf

3.3. 형사구제

침해를 당한 권리자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경찰/검찰에 의해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손해(현재 약 740유로 이상)가 발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자인 개인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되나, 우크라이나에서는 개인만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 및/또는 도덕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형사 제재는 벌금에서부터 징역까지 가능하며 침해한 제품과 설비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다. 만일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형사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도, 경찰에 의해서 행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과 침해 제품 및 설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Ⅵ. 카자흐스탄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0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1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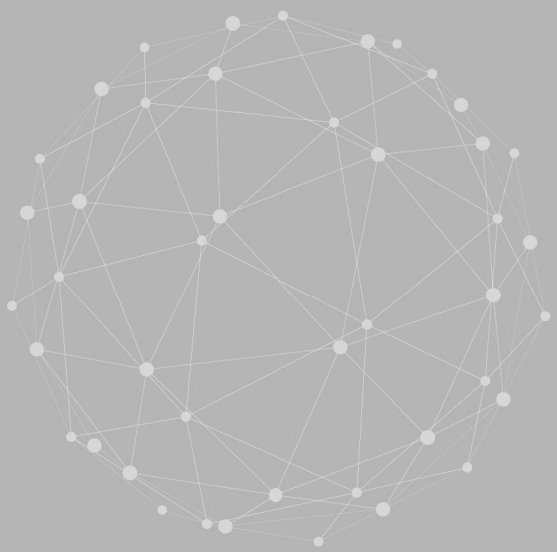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카자흐스탄은 발명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서비스표), 원산지 표기(PDO),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선택 성취(selection achievement)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하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고, 상표(서비스표) 및 원산지 표기(PDO)에 대해서는 「상표, 서비스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진보성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을 가지며,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산업 또는 수공업 제품의 예술·디자인적 표현에 대해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 이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매회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 외,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을 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카자흐스탄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1. 12. 25.)	가입	가입	가입 (2010. 12. 8.)	가입	미가입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으로는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NIIP)[50]가 있다.

[그림]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 조직도[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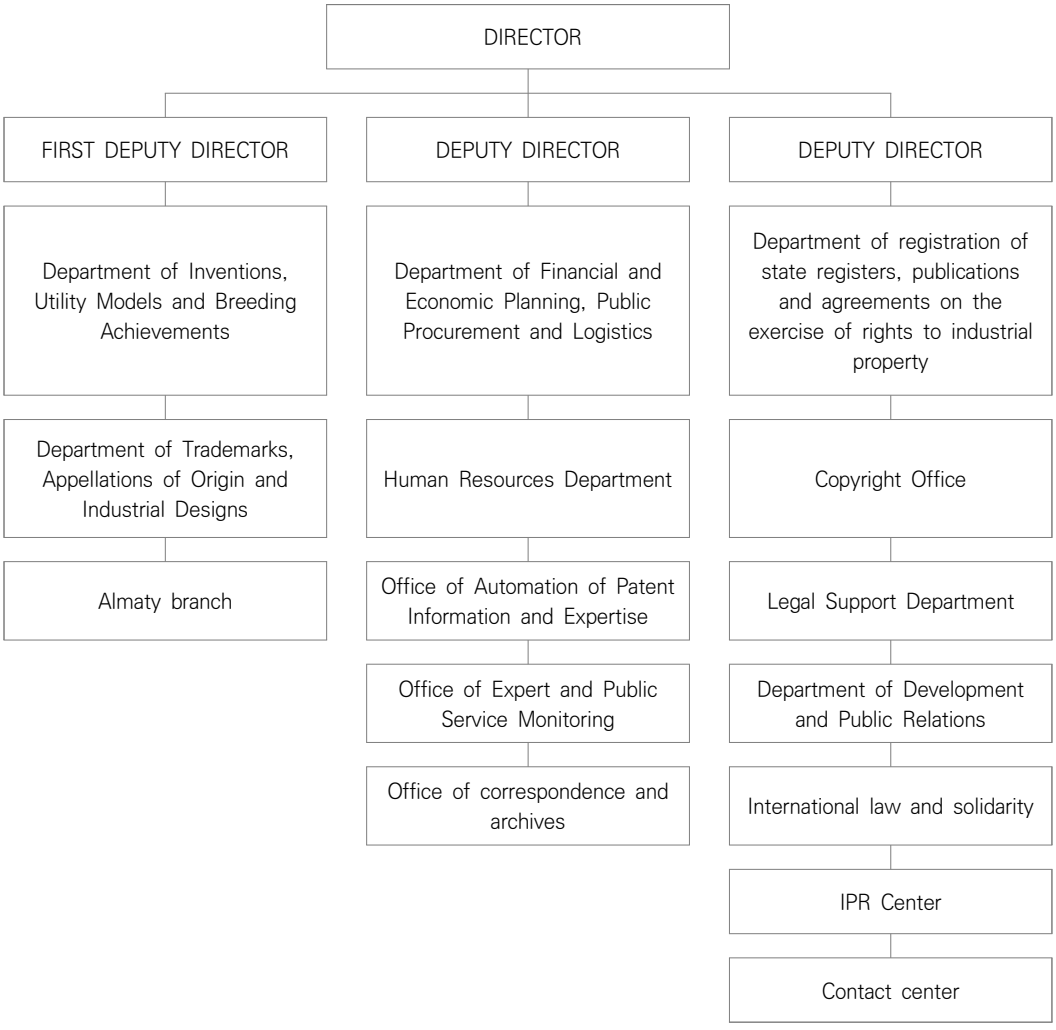

50) 홈페이지 주소는 www.kazpatent.kz
51) https://kazpatent.kz/kk/content/kr-m-uzmi-rmk-uyymdyk-kurylymy

※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은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APO는 지난 1995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8개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한다.[52)]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동의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창설목표로, 이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2019년 11월 1일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53)]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820	271	-	-	107	193
2015	1,323	232	-	-	94	123
2016	1,054	231	8,491	14,391	89	150
2017	1,139	173	-	-	105	98
2018	887	193	10,569	16,899	83	170

52)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5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KZ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54)]

카자흐스탄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제품(미생물 구조, 물질, 균주 및 동식물의 세포배양), 공정(물질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행위를 가하는 과정), 기성제품의 적용, 새로운 공정의 적용 또는 신제품의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기술 솔루션은 발명특허로 보호된다.

나. 등록요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기호, 프로그램 및 법칙
- 시설물, 건물, 토지 프로젝트 및 도면 등

다. 취득절차[55)]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방식 심사, ③ 실체심사, ④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를 극복한 경우) 특허 허여, ⑥ 특허 허여한 경우, 등록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출원 단계

카자흐스탄에 특허출원 방법은 크게 ① 카자흐스탄 국내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② 국제특허조약인 PCT 출원을 통한 특허 출원 후 카자흐스탄을 지정하는 방법, ③ 유라시아 특허조약(EAPO)에 의한 특허출원 방법이 있다.

카자흐스탄 국내 특허 출원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또는 러시아어 중 택일할 수 있고, 그 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위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54) https://www.kazpatent.kz/en/content/what-invention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55) https://www.kazpatent.kz/en/content/stages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2) 심사 단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방식심사를 통과하고 출원인이 실체심사료를 지급하면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실체심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카자흐스탄 법무부 항소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특허권 취득에는 출원일로부터 약 2~3년이 소요된다.

라. 특허권의 효력

1) 존속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의약품 및 살충제 관련 발명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법률에 의해 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며, 이 경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2)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특허권 소유자는 자신의 특허에 관한 독점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위 권리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소유자는 자신의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위 실시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심판제도

1) 특허등록무효

하자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등록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화 주장이 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가 인정될 경우, 출원일부터 해당 권리는 취소된다(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2) 이의제기

출원에 대한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항소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특허법 제23조 제3항).

바. 비용[56]

(단위: KZT)

항목	법인용	중소기업용	개인용
서면 출원	20,320.16	16,256.13	6,096.16
전자 출원	17,271.52	13,817.22	5,181.12
실체 심사	53,519.20	43,815.36	16,055.20

사. 유라시아 특허제도[57]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연방의 해체 후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통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서를 국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별 공화국의 특허심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라시아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였고,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을 우대하며 출원심사는 러시아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특허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진행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따라서 모든 출원서와 서류는 제출되거나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APO와의 모든 서신(문서)은 등록된 유라시아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EPO 절차와 달리,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할 때 체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 특허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

56) 기타 상세 비용은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에서 검색 가능

57)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3) 출원서가 유라시아 특허청에 의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유라시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고자하는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체약국에서 유라시아 출원서(신청서)는 유라시아 출원서와 동일한 출원일 및 우선일로 국가별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가 출원서로 간주된다.

(4) 특허 출원에 관해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 진행하며,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공개일(발행일)로부터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하며, 즉,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 특허와 동등하다.

2.2. 실용신안

가. 보호대상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진단·치료 및 수술 방법을 제외한 제품(미생물 구조, 물질, 균주 및 동식물의 세포배양), 공정(재료를 이용하여 대상물에 행위를 가하는 과정), 유명 제품 및 새로운 방식, 특수 신제품의 적용과 관련한 기술 솔루션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고 있다.[58]

나. 등록요건

신규 개발 되었으며(신규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용신안 모델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 취득절차[59]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기초적 요건의 심사, ③ (부정적 심사결과의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볼복 ④ 실용신안등록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용신안 특허성 요건에 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위 실용신안 특허성에 관해서는 출원인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실용신안 등록을 허여한다.

카자흐스탄의 실용신안권 취득에는 약 1년이 소요된다.

58) 세계법제정보센터
59)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60]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실용신안권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독점권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등록실용신안을 상업적으로 실시할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 실시권 설정 및 실용신안권의 양도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계약에 의해 설정하거나, 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특허법 제11조)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

실용신안권자는 양도계약에 따라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독점권을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권리의 양도는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4) 효력 제한

특허법 제12조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과학적 연구 또는 실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자연재해, 재난, 중대한 사고 시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심판제도[61]

1) 실용신안등록무효

하자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유효기간 내에 등록실용신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화 주장이 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가 인정될 경우, 출원일부터 해당 권리는 취소된다(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60) 카자흐스탄 특허법 규정
61) 카자흐스탄 특허법 규정

2) 이의제기

출원에 대한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항소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특허법 제23조 제3항).

바. 비용[62)]

(단위: KZT)

항목	법인용	중소기업용	개인용
서면 출원	16,450.56	13,160.45	4,934.72
전자 출원	13,982.08	11,185.66	4,194.40

2.3. 디자인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63)]

카자흐스탄 특허법은 신규 개발되었고(신규성), 독창성을 가지며,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산업 또는 수공업 제품의 예술·디자인적 표현에 대하여 산업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제품 도면 및 산업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성 목록에 반영된 특성 전체가 출원일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던 정보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인정된다.

산업디자인은 이의 본질적 특성이 제품의 창의성을 결정하는 경우 독창성이 인정된다.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예는 아래와 같다.

- 오직 제품의 기술적 기능만이 부각되는 경우
- 건축물 (소형 건축물 제외), 공업·수력기술 및 기타 고정 설비
- 액체, 가스, 분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불안정한 형태의 대상물
- 공공의 이익, 인도 및 도덕적 원칙에 반하는 제품 등

62) 기타 비용은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kazpatent.kz/ru/content/stoimost-1)에서 검색 가능
63)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카자흐스탄 특허법 규정

나. 취득절차[64] 및 출원/등록 기간[65]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부정적 심사결과의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볼복, ⑤ 등록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의 두 단계로 구성된 2단계 시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방식심사는 전문 기관에 출원이 접수된 후 실시되며 출원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출원일과 우선일을 정하고, 실체심사에서는 방식심사 후 전문 기관이 산업디자인의 특허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카자흐스탄의 디자인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1.5년이다.

다. 디자인권의 효력[66]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까지이며,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2) 실시권 설정 및 디자인권의 양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계약에 의해 설정하거나, 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특허법 제11조)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

디자인권자는 양도계약에 따라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권리의 양도는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라. 심판제도[67]

1) 디자인등록무효

하자있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유효기간 내에 등록디자인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화 주장이 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가 인정될 경우, 출원일부터 해당 권리는 취소된다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

64)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65) https://mspcorporate.com/objects/industrial-design-kazakhstan.htm
66)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67) 카자흐스탄 특허법 규정

2) 이의제기

출원에 대한 등록 거부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항소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특허법 제23조 제3항).

마. 비용[68]

(단위: KZT)

항목	법인용	중소기업용	개인용
서면 출원	18,039.84	14,431.87	5,411.84
전자 출원	15,333.92	12,267.14	4,599.84
실체심사	36,804.32	29,443.46	11,040.96

바. 유라시아 디자인 특허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하고,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68) 기타 상세 비용은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kazpatent.kz/ru/content/stoimost-1)에서 검색 가능

2.4. 상표

가. 보호대상[69]

카자흐스탄은 상표(서비스표)를 특정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서비스)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유사한 상품(서비스)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

시각, 언어, 알파벳, 숫자, 3차원 및 기타 마크 또는 그 조합뿐 아니라, 모든 색상 또는 색상의 조합 역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나. 등록요건[70][71]

「상표, 서비스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등록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절대적 거절이유), 선출원/등록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등록 가능하다(상대적 거절이유).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예비심사, ③ 전체심사, ④ 등록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심사인 예비 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서 내용, 필요한 서류 등이 제출되어 있어야 하고, 2단계 심사인 전체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카자흐스탄의 상표 취득에는 약 2년정도가 소요된다.

69)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70)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71) 보람국제특허법률사무소 Daum cafe 게시글

라. 상표권의 효력[72)]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법 제15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그 존속기간 마지막 해에 제출된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매회 10년간 연장된다.

2) 보호범위

상표권의 법적 보호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고,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처분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3) 사용권 설정 및 상표권 이전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고, 등록 상표에 대한 독점권의 양도 역시 가능하다.

마. 심판제도[73)]

상표 출원인은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경우,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 상표를 불사용한 경우나 등록 상표에 절대적/상대적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규정한 등록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바. 비용[74)]

(단위: KZT)

항목	서면	전자
상표, 서비스표 등록 출원 접수 및 심사	60,599.84	51,509.752
단체 상표 등록 출원 접수 및 심사	101,153.92	85,980.55

72)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및 법 규정
73) 보람국제특허법률사무소 Daum cafe 게시글
74) 기타 상세 비용은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kazpatent.kz/en/content/fee-3)에서 검색 가능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문학 또는 예술 작품 및 저작물에 대한 작가, 예술가, 음악가, 예술가, 방송인 및 기타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은 서면(원고, 타이프 스크립트, 악보 등), 구두 (대중 발언, 공연 등), 사운드 또는 비디오 레코딩(기계적, 디지털, 자기, 광학 등), 이미지(그림, 스케치, 그림, 계획, 그림,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또는 포토 프레임 등), 3차원(조각, 모형, 레이아웃, 구성 등)의 형태로 모두 보호 가능하다.

나. 저작권의 효력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존속기간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그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2)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 등록요건

카자흐스탄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침해 등이 문제될 경우 법원에 의해서 저작권의 확인 또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라. 비용[75)]

(단위: KZT)

항목	관납료
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정보를 등록부에 입력하기 위한 비용	**6,932.80**

75) 기타 상세 비용은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kazpatent.kz/en/content/cost)에서 검색 가능

2.6 기타

가. 원산지 표기[76)]

1) 보호대상

원산지 표기(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는 지적재산권의 고유한 대상이다. 법에 따르면 특정 환경 조건을 포함하여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된 특별한 속성, 품질, 평판 등을 통해 알려진 지리적 명칭을 PDO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2) PDO의 효력

상표권과 달리, PDO는 그 사용권한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사용권한에 대한 사용권 설정 역시 불가하다. PDO 등록 후 권리의 소유자는 인증된 PDO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가진다.

10년마다 PDO 사용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여부가 제품의 특수성, 품질 및 기타 특성의 보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76) https://www.kazpatent.kz/en/content/fee (NIIP 카자흐스탄 지식재산청)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카자흐스탄 사법제도 개관[77)]

카자흐스탄은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하급심 법원으로 주법원 및 2개의 특별시에 설치된 시법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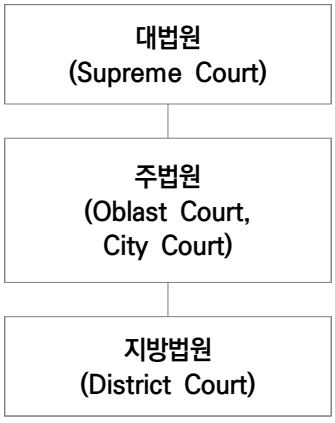

3.2. 대응절차[78)]

가. 민사적 대응

각 권리 소유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청구 또는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나. 형사적 대응

각 권리의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 행정적 대응

침해 제품이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권리자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border measures) 등을 통해 침해 제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77) 윤정화, 카자흐스탄의 사법체계, 116쪽 및 125쪽, 한국법제연구원
78) https://www.mondaq.com/trademark/519818/intellectual-property-in-kazakhstan-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Ⅶ. 키르기스스탄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2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2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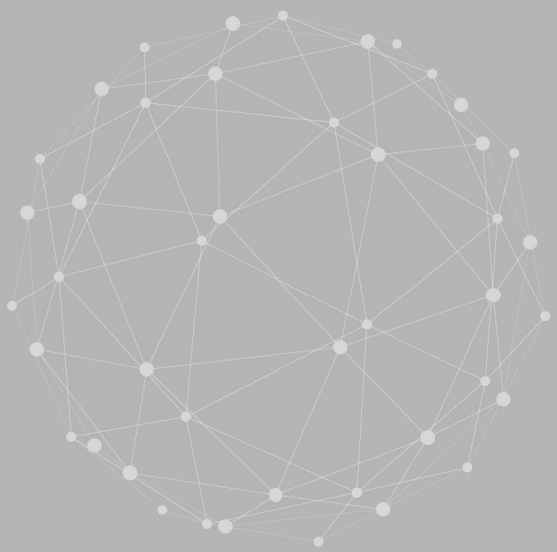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민법 제1037조 이하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외에도, 별도로 지식재산권법(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법(상표, 원산지 표시), 저작권법으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출원, 심사 및 불복절차), 효력,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사법상 구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분야의 신규성·진보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고, 출원서는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요구되며,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출원된 상표에 대한 형식심사는 4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실질심사는 약 9~10개월이 소요된다. 상표권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나라의 상표권 보호제도와 대동소이하다.

특허권자 혹은 상표권자는 권리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상표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상품의 압수 또는 파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개 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1. 12. 25.)	가입	가입	가입 (2004. 6. 17.)	가입	가입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키르기스스탄은 1993년 키르기스스탄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특허부서를 설립하였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6년 키르기스스탄 특허청(KYRGYZPATEN)을 창설하였다.[79]

이 외, 키르기스스탄는 유라시아 특허제도 회원국으로,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 특허 혹은 디자인특허를 출원을 할 경우 러시아 외 7개 회원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은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APO는 지난 1995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8개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은 러시아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한다.[80]

유라시아 특허청은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동의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창설목표로, 이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2019년 11월 1일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81]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37	7	372	6,330	48	714
2015	129	4	341	6,330	21	904
2016	90	5	269	6,085	17	460
2017	140	9	519	6,986	11	502
2018	-	-	552	7,745	-	-

79) 키르기스스탄 특허청 http://patent.kg/en/about-us-2/kyrgyzpatents-history/
80)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81)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KG

2.1. 특허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분야의 신규성·진보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지식재산권법 제5조).

1) 발명

발명의 주제는 장치, 방법, 물질, 미생물 균주, 식물 및 동물의 세포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 또는 기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이전에 알려진 장치, 방법, 물질 및 균주의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경제의 조직 및 관리 방법, 일정 및 규칙, 지적 활동, 게임 조직의 규칙 및 방법, 알고리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 계획된 구조물, 건물 및 영토에 대한 초안 및 계획, 미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제품의 외형에 관한 제안, 집적 회로 지형, 다양한 식물 및 동물 품종, 환경에 유해한 공익, 인도주의적 원칙 및 도덕에 반하는 제안의 경우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신규성

발명은 최신기술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고, 최신기술은 발명 이전 전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3) 진보성

발명은 명백하게 최신 기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에 관한 전문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선정한다.

4) 산업적 적용가능성

발명은 산업, 농업, 공중 보건 서비스 및 기타 국가 경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취득절차

1) 출원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82] 만일 다른 언어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키르기스스탄 특허 출원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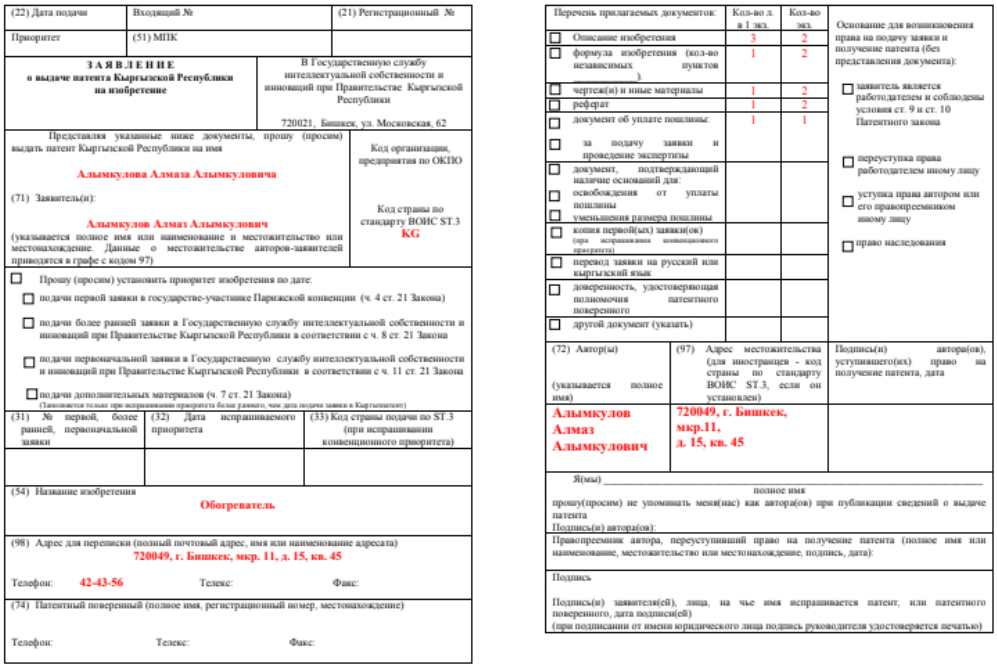

(22) Дата подачи | Входящий № | (21)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
Приоритет | (51) МПК

З А Я В Л Е Н И Е
о выдаче патент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изобрет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новаци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720021, Бишкек, ул. Московская, 62

Представляя указанные ниже документы, прошу (просим) выдать патен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имя
Алымкулова Алмаза Алымкуловича

Код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ОКПО

(71) Заявитель(и):
Алымкулов Алмаз Алымкулович
(указывается полное имя или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о ил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Данные о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е авторов-заявителей приводятся в графе с кодом 97)

Код страны по стандарту ВОИС ST.3
KG

☐ Прошу (просим) установить приоритет изобретения по дате:
☐ подачи первой заявки в государстве-участнике Парижской конвенции (ч. 4 ст. 21 Закона)
☐ подачи более ранней заявк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новаци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ч. 8 ст. 21 Закона
☐ подачи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заявк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новаци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ч. 11 ст. 21 Закона
☐ подач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ч. 7 ст. 21 Закона)
(Заполняется только при испрашивании приоритета более раннего, чем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в Кыргызпатент)

(31) № первой, более ранней,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заявки	(32) Дата испрашиваемого приоритета	(33) Код страны подачи по ST.3 (при испрашивании конвенционного приоритета)

(54) Название изобретения
Обогреватель

(98) Адрес для переписки (полный почтовый адрес, имя или наименование адресата)
720049, г. Бишкек, мкр. 11, д. 15, кв. 45
Телефон: **42-43-56** Телекс: Факс:

(74) Патентный поверенный (полное имя,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Телефон: Телекс: Факс:

Перечень прилагаемых документов:	Кол-во д. в 1 экз.	Кол-во экз.	Основание дл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рава на подачу заявки и получение патента (без представления документа):
☐ Описание изобретения	3	2	
☐ формула изобретения (кол-во независимых пунктов)	1	2	
☐ чертеж(и) и иные материалы	1	2	☐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работодателем и соблюдены условия ст. 9 и ст. 10 Патентного закона
☐ реферат	1	2	
☐ документ об уплате пошлины:	1	1	
☐ за подачу заявки и проведение экспертизы			☐ переуступка права работодателем иному лицу
☐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наличие оснований для:			
☐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уплаты пошлины			☐ уступка права автором или его правопреемником иному лицу
☐ уменьшения размера пошлины			
☐ копия первой(ых) заявки(ок) (при испрашивании конвенционного приоритета)			☐ право наследования
☐ перевод заявки на русский или кыргызский язык			
☐ доверенность, удостоверяющая полномочия патентн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 другой документ (указать)			

(72) Автор(ы) (указывается полное имя)	(97) Адрес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 код страны по стандарту ВОИС ST.3, если он установлен)	Подпись(и) автора(ов), уступившего(их)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патента, дата
Алымкулов Алмаз Алымкулович	**720049, г. Бишкек, мкр.11, д. 15, кв. 45**	

Я(мы) _____
полное имя
прошу(просим) не упоминать меня(нас) как автора(ов) при публикации сведений о выдаче патента
Подпись(и) автора(ов):
Правопреемник автора, переуступивший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патента (полное имя или наименование,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о ил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подпись, дата):

Подпись
Подпись(и) заявителя(ей), лица, на чье имя испрашивается патент, или патентного поверенного, дата подписи(ей)
(при подписании от имени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подпись руководителя удостоверяется печатью)

특허 신청은 표준 양식의 질문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고, 발명에 대한 설명·발명의 제목·발명의 요약도면 및 기타 자료 목록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은 자료를 수정할 권리가 있다(제22조).

82) 신청서 양식은 키르기스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 형식 심사

키르기스스탄 특허 출원 심사 절차는 형식, 예비, 실질 심사로 구성된다.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개최되는 형식심사를 통하여 출원 서류의 구성, 정확성, 결정 대상의 청구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 수락을 통보받으나,[83] 만일 신청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개월 내에 수정 및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신청인이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제23조의 1).

3) 예비 심사

형식 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예비 심사를 진행하여 신청된 발명이 특허성 조건을 준수하는지, 취소되지 않은 신청 중 우선순위 있는 신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4) 실질 심사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발명이 제5조의 특허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은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24조). 심사 요청에 따른 보충 자료는 발명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신청인이 지정 기간 내에 기한의 연장 요청이나 요청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5)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특허청의 거부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3개월 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6개월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신청의 전환

발명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 신청인은 특허 부여 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지식재산권법 제26조).

83) 키르기스탄 특허청 http://patent.kg/en/sample-page-5-3-2-2/sample-page-5-3-5-2-2-2-2-2-2-2-2-2-2-2-2/

7) 특허 등록

특허 부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이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면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은 해당 특허를 등록부에 등록한다(제28조).

다. 특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2) 특허권자의 권리, 이전 및 실시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특허받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제11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특허권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특허권의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민법 제1042조, 지식재산권법 제15조).

3) 강제실시

긴급 상황(재난, 전염병)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특허에 대한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한다(제12조)

4)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특허 대상 제품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는 실험, 긴급 상황에서 특허 대상 제품을 사용하고 특허 소유자에게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상업적 용도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제13조).

5)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 침해의 중단, 손해배상, 특허 침해자가 받은 소득의 징수, 특허 침해로 간주되는 제품의 몰수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라. 심판제도

등록된 특허는 이의제기로 인하여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특허가 제5조의 특허 조건(발명 해당여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출원당시 누락된 문서가 있다거나, 특허권자가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때 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 역시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한 자와 함께 심사에 참여하게 되고, 특허권 이의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마. 비용

특허 출원, 심사, 연차료 등에 관한 비용은 키르기스스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4]

바. 유라시아 특허제도[85]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연방의 해체 후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에서 공통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서를 국가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개별 공화국의 특허심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을 통해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였다. 회원국 내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라시아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였고, 특허 수수료는 내국인을 우대하며 출원심사는 러시아 특허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

84)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2-2/%D0%BF%D0%BE%D0%BB%D0%BE%D0%B6%D0%B5%D0%BD%D0%B8%D1%8F/%D0%BF%D0%BE%D1%81%D1%82%D0%B0%D0%BD%D0%BE%D0%B2%D0%BB%D0%B5%D0%BD%D0%B8%D0%B5-%D0%BF%D1%80%D0%B0%D0%B2%D0%B8%D1%82%D0%B5%D0%BB%D1%8C%D1%81%D1%82%D0%B2%D0%B0-%D0%BA%D1%8B%D1%80%D0%B3%D1%8B%D0%B7-2-1-8/

85) https://mspcorporate.com/Eurasian_patent_procedure.html

유라시아 특허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진행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따라서 모든 출원서와 서류는 제출되거나 나중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EAPO와의 모든 서신(문서)은 등록된 유라시아 변리사를 통해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EPO 절차와 달리,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할 때 체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유라시아 특허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 특허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 대해 연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화된다.

(3) 출원서가 유라시아 특허청에 의해 거절되더라도 출원인은 유라시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고자하는 체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체약국에서 유라시아 출원서(신청서)는 유라시아 출원서와 동일한 출원일 및 우선일로 국가별 특허청에 제출되는 국가 출원서로 간주된다.

(4) 특허 출원에 관해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 진행하며,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공개일(발행일)로부터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하며, 즉, 등록된 유라시아 특허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 특허와 동등하다.

2.2. 실용신안

가. 보호대상

신규성과 산업적 적용 가능성이 요구된다.

1) 신규성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

본질적 기능 전체가 최신 기술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경우 산업적 적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보호의 예외

물질, 미생물 균주, 식물 및 동물 세포 배양, 새로운 목적 또는 기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사용,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경제의 조직 및 관리 방법, 일정 및 규칙, 지적 활동, 알고리즘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 계획된 구조물, 건물 및 영토에 대한 초안 및 계획, 미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제품의 외형에 관한 제안, 집적 회로 지형, 다양한 식물 및 동물 품종, 환경에 유해한 공익, 인도주의적 원칙 및 도덕에 반하는 제안의 경우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86]

나. 취득절차

1) 출원

실용신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실용신안에 대한 설명, 도면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식재산권법 제19조).

2) 심사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은, 실용신안 신청에 대하여 형식 심사와 예비 심사를 이행하고, 특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한다(지식재산권법 제25조).

형식 심사는 2개월 이내에 수행되며, 위 기간 동안 필요한 문서의 구성, 실행의 정확성, 대상에 대한 결정의 적절성 등이 판단된다. 신청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 수락을 통보받으나,[87] 만일 신청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2개월 내에 수정 및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신청인이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식재산권법 제25조, 제23조의 1).

형식 심사 종료 후 10개월 이내에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실용신안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3) 신청의 전환

발명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 신청인은 특허 부여 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지식재산권법 제26조).

86) 키르기스스탄 특허청, http://patent.kg/en/poleznie-modeli/voprosi-model/
87) 키르기스탄 특허청 http://patent.kg/en/sample-page-5-3-2-2/sample-page-5-3-5-2-2-2-2-2-2-2-2-2-2-2-2/

다. 실용신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위 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차부터 연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권리, 이전 및 실시

실용신안권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제11조).

실용신안권자는 타인에게 권리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과 동시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실용신안권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의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민법 제1042조, 지식재산권법 제15조).

라. 심판제도

특허의 내용과 동일하다.

마. 비용

실용신안 출원, 심사, 연차료 등에 관한 비용은 키르기스스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8]

88)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2-2/%D0%BF%D0%BE%D0%BB%D0%BE%D0%B6%D0%B5%D0%BD%D0%B8%D1%8F/%D0%BF%D0%BE%D1%81%D1%82%D0%B0%D0%BD%D0%BE%D0%B2%D0%BB%D0%B5%D0%BD%D0%B8%D0%B5-%D0%BF%D1%80%D0%B0%D0%B2%D0%B8%D1%82%D0%B5%D0%BB%D1%8C%D1%81%D1%82%D0%B2%D0%B0-%D0%BA%D1%8B%D1%80%D0%B3%D1%8B%D0%B7-2-1-8/

2.3. 산업 디자인

가. 보호대상

산업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제품의 장식, 장식 또는 미적 측면으로, 신규성과 창의성이 요구된다(지식재산권법 제7조).

1) 신규성 및 창의성

본질적 요소의 합계가 우선일 이전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산업디자인 및 이에 대한 출원을 철회하지 않은 사람이 이전에 제출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창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예외 사항

기술적 기능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거나, 건축물, 인쇄물,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의 경우 산업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취득절차

1) 출원

산업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이미지, 산업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식재산권법 제20조).

2) 심사(지식재산권법 제27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형식심사를 실시하여 신청 서류의 구성, 등록의 정확성, 신청 사항의 산업 디자인 준수 여부, 우선 순위 등을 확인한 다음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라. 산업 디자인권의 효력

1) 보호기간

산업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5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지식재산권법 제4조)

2) 권리, 이전 및 실시

산업 디자인권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제11조).

산업 디자인권자는 타인에게 권리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과 동시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산업 디자인권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의 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민법 제1042조, 지식재산권법 제15조).

마. 심판제도

특허의 내용과 동일하다.

바. 비용

디자인 출원, 심사, 연차료 등에 관한 비용은 키르기스스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9]

사. 유라시아 디자인 특허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하고,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89)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2-2/%D0%BF%D0%BE%D0%BB%D0%BE%D0%B6%D0%B5%D0%BD%D0%B8%D1%8F/%D0%BF%D0%BE%D1%81%D1%82%D0%B0%D0%BD%D0%BE%D0%B2%D0%BB%D0%B5%D0%BD%D0%B8%D0%B5-%D0%BF%D1%80%D0%B0%D0%B2%D0%B8%D1%82%D0%B5%D0%BB%D1%8C%D1%81%D1%82%D0%B2%D0%B0-%D0%BA%D1%8B%D1%80%D0%B3%D1%8B%D0%B7-2-1-8/

2.4. 상표

가. 보호대상

상표권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 가능한 식별력 있는 모든 표시 또는 조합은 언어, 시각, 입체 및 기타 지정을 포함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나. 등록요건

1) 비등록 사유

식별력 외에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지 또는 법률에 의해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히 내용, 품질 또는 출처에 관하여 공중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지,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 등의 경우에도 등록되지 않는다.

2) 기타 등록 거부 사유

위 1)항의 사유 외에도 이전에 우선권을 보유한 동종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키르기스스탄에 등록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명한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이름 및 그로부터의 문자 또는 인용, 예술 작품 또는 그 일부를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동의 없이 복제하는 표지,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기관이 소유한 산업 디자인을 복제하는 표지 등의 경우에도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상표 등록 신청 및 이에 대한 심사는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에서 진행된다.

1) 출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표지, 표지에 대한 설명, 상표 등록이 요청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Nice 분류에 따름)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

키르기스스탄의 상표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거친다.[90] 4개월 이내에 형식 심사를 거친 다음, 9~10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91]

90) https://mspcorporate.com/objects/trademark-kyrgyzstan.htm
91) https://mspcorporate.com/objects/trademark-kyrgyzstan.htm

3) 불복 절차

신청인은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의 거부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에 재차 불복하고자 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92]

라. 상표권의 효력

1) 보호 기간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 갱신 가능하다.

2) 권리

상표 등록권자는 상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동종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93]

3) 이전 및 실시

상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상표법 제22조), 다른 사람에게 계약에 따른 실시권(라이센스)를 부여할 수도 있다(상표법 제23조).

4) 권리의 상실

상표 등록 후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는 미사용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해지된다.

마. 심판제도

제3자는 등록 이후 5년 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94]

바. 비용

상표 출원, 심사, 연차료 등에 관한 비용은 키르기스스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95]

---

92)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27bb12b-beb3-48be-aa28-06b7217c5392
9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27bb12b-beb3-48be-aa28-06b7217c5392
94)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27bb12b-beb3-48be-aa28-06b7217c5392
95) http://patent.kg/en/sample-page-5-4/sample-page-2-2/%D0%BF%D0%BE%D0%BB%D0%BE%D0%B6%D0%B5%D0%BD%D0%B8%D1%8F/%D0%BF%D0%BE%D1%81%D1%82%D0%B0%D0%BD%D0%BE%D0%B2%D0%BB%D0%B5%D0%BD%D0%B8%D0%B5-%D0%BF%D1%80%D0%B0%D0%B2%D0%B8%D1%82%D0%B5%D0%BB%D1%8C%D1%81%D1%82%D0%B2%D0%B0-%D0%BA%D1%8B%D1%80%D0%B3%D1%8B%D0%B7-2-1-8/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

저작권은 그 목적, 장점,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과학, 문학, 예술 작품에 적용되고, 저작물은 언어적,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표현되고 지각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저작물의 등록이 없어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키르기스스탄 민법 제1047조, 저작권법 제6조).

저작권은 문학 작품(문학, 과학, 교육, 언론 등),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품, 음악, 뮤지컬 드라마, 안무, 시청각 작품, 회화, 조각, 그래픽, 장식 및 연극 예술작품 건축, 도시계획, 정원 및 공원 예술작품, 사진 작품,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위와 같은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도 대상에 해당된다(키르기스스탄 민법 제1048조, 저작권법 제7조).

다만, 공식 문서(법률, 규정, 결정 등) 및 공식 번역, 공식적인 상징 및 표시(깃발), 민속 예술작품, 정기 언론 정보를 구성하는 시사에 대한 일간 뉴스 또는 정보 등의 경우 저작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8조).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공개 전시권, 공연권, 번역권 등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5조, 제16조).

이외에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료 공연, 등의 경우에도 저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1조, 제22조).

다. 저작권의 효력

1) 보호기간(저작권법 제27조)

저작권은 저작자의 일생과 사망으로부터 50년간 유효하고, 공동저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마지막 생존 저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유효하다. 가명 또는 익명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 출판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50년간 유효하다.

2) 이전

저작권은 상속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29조), 계약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30조).

3) 저작권의 제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의 의도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 리뷰의 신문 및 잡지 기사의 발췌문의 복제를 포함하여 과학 연구, 논쟁, 비평 또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번역 또는 원문을 인용하거나, 교육 출판물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삽화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는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9조).

라. 저작권 등록

저작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에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제출된 문서는 키르기스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96]

2.6 지리적 표시(원산지 표시)

키르기스스탄은 상품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국가, 정착지, 지역 또는 기타 지리적 개체의 이름으로 상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상표법에 마련하였다(상표법 제27조 이하).

원산지 명칭은 등록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상표법 제28조), 10년간 유효하나 10년 동안 매번 갱신할 수 있다(제33조).

다만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양도나 실시권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제36조).[97]

96) 키르기스스탄 특허청 http://patent.kg/en/objecti-avt-prava/chast-zadav-vopros/
97) 키르기스스탄 특허청 http://patent.kg/en/appellation-of-origin/faqs/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사법구제

일반 규칙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사법 절차에 의해 보호된다. 이러한 분쟁은 주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키르기스스탄 민법 제1096조).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외에도 상표가 불법적으로 적용된 상품의 압수 또는 파괴를 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41조).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외에도 소득을 징수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최저임금의 20배에서 50,000배까지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9조).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처벌로 행정 벌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키르기스스탄 행정적 책임에 관한 법령 제339조).

키르기스스탄 세관 당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및 원산지 명칭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권리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IP 권리는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한 후 최대 2년 동안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등록부에 입력된다. 지식재산권이 있는 물품이 통관에서 위조품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은 일시 보관하고 10일 동안 해당 물품의 반출을 중지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지된 물품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 시작을 확인하는 문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98]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불공정 경쟁 억제를 위해 국가 독점 금지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권한의 결정 (명령)은 키르기스스탄 영토 전체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구속력을 갖는다. 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99]

98) https://www.hg.org/legal-articles/intellectual-property-in-the-kyrgyz-republic-4926
99) https://www.hg.org/legal-articles/intellectual-property-in-the-kyrgyz-republic-4926

3.3. 형사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은 키르기스스탄 형법에 의해 부과된다. 키르기스스탄 형법 제199조는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개 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Ⅷ. 뉴질랜드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4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4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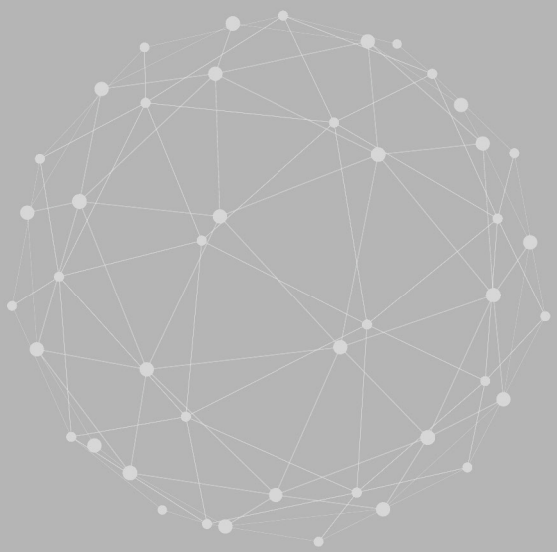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 등으로 나뉘어지며 그 밖에 와인 등 지리적표시 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 특허법(Patents Act 1953), 디자인법(Design Act 1953),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영국법과 관습법을 토대로 하며, 최근 디지털 및 전자기술 동향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등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뉴질랜드는 호주와 특허출원절차 통합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었으나, 2018년경 뉴질랜드 정부가 비용 및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에는 실용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뉴질랜드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2. 12. 1.)	가입	가입	가입 (2012. 12. 10.)	가입	가입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뉴질랜드 경제개발부 산하 기관인 뉴질랜드 상표등록 및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 New Zealand; IPONZ)에서 특허 및 상표권의 심사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웹사이트[100]를 통해 이미 등록된 특허 및 상표권에 대한 검색과 신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특허청 저작권, 디자인 저작권 및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권리(Plant Variety Right) 등록 등 뉴질랜드 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상세 조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101]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102]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636	6,092	15,650	23,951	400	885
2015	1,184	5,317	15,769	26,382	345	984
2016	1,075	5,311	16,577	29,120	358	1,000
2017	1,014	5,146	17,099	30,106	343	948
2018	1,017	5,221	17,806	32,519	463	1,118

100) www.iponz.govt.nz
101) https://www.iponz.govt.nz/about-iponz/#jumpto-organisation-chart4
102)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NZ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신규성의 판단기준은 국내공지, 국내간행물 등 지역주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용하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뉴질랜드 특허법(Patents Act 1953) 및 개정안은 특허의 보호 대상에서 인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과정,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인간 치료 방법,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방법, 식물 신품종, 유기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행 개정법(CPTPP Act)」에 의해 개정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특허법 시행 전에는, 뉴질랜드 특허법에는 발명자의 자기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 출원서 제출 전 12개월 내에 특정 상황 하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및 출원서 제출 전 6개월 내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선행기술이 아닌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동 개정으로 12개월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지 1년 이내에 완전한 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발명은 뉴질랜드 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도는 2018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적용된다.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명세서작성 및 접수

발명에 대한 서면 서술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임시 특허 명세서를 먼저 출원한 다음 12개월 후에 전체명세서를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하면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은 몇 주 내에 특허 심사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인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호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4년 뉴질랜드 특허 규정에 의하면 특허 명세서는 •A4 용지 형식, • 왼쪽 여백 2.5 cm 이상, 오른쪽 및 위쪽 및 아래쪽 여백 2 cm 이상의 규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면에는 각 그림에 대해 숫자를 매기도록 한다. 출원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 내에서 등록된 특허권은 최장 20년까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신청 전 기존의 유사 또는 동일한 특허의 유무에 대해 반드시 검색해하는 것이 좋다. IPONZ 웹사이트에서 뉴질랜드 내 기존 특허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WIPO(www.wipo.int), 미국 특허청(www.uspto.gov) 등에서 기타 국가에서의 특허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2) 출원공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특허청장은 공보에 출원인과 출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특허청장 사이트에서 출원인과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3) 심사

뉴질랜드의 출원심사는 방식심사 및 신규성 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2013년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진보성 평가까지 확대됐다. 실체심사는 출원 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는 3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은 출원이 법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심사보고서를 발행한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답변서 제출 시 보정 가능하다. 단, 명세서에 게재된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4) 이의신청

특허 출원은 특허법 및 규정의 모든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된다. 특허출원의 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기타

뉴질랜드에서 개별국 출원방식 외에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뉴질랜드 국내 단계 진입,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방식을 통해 특허를 등록출원 할 수 있다. 특허가 등록되기까지는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라. 특허권의 효력

1) 특허의 실시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 발명자에게 특허 존속기간 동안 발명품의 제조, 판매, 사용 등 발명을 실시하고 타인에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마. 심판제도

특허출원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누구든지 특허가 출원된 이후 특허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 신청을 특허청이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바. 비용

'2014년 특허 규칙(Patent Regulations 2014)' 개정안에 의하면 개정 특허 수수료가 2019년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특허출원료는 청구항 30개까지 120달러(뉴질랜드 달러, 이하 동일)이며, 청구항이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 단위로 12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심사청구 수수료는 기존 500달러에서 750달러로 인상되며, 연차료는 4년차에서 9년차까지는 200달러로, 10년차에서 14년차는 450달러로, 15년차에서 19년차는 1,0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2.3. 디자인

가. 보호대상

뉴질랜드의 디자인법(Design Act 1953)에 의하면 디자인은 어떤 산업적인 과정이나 수단에 의해 상품에 적용되는 모양, 구성, 배열, 무늬, 또는 장식물인 디자인으로 정의된다.

나. 등록요건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서 신규성의 판단 기준은 국내 공지, 국내 간행물 등 뉴질랜드 내에서 공지되었는지 여부(지역주의)에 따라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다. 디자인이 공중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한 것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창작자 등에 의하여 공지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디자인이 출원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원칙인데, 뉴질랜드는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한편, 주조물 또는 모형 이외의 조각작품, 문학, 예술적 성질의 인쇄물, 왕실의 초상 등은 디자인 부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디자인법 제5조).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출원서 제출

신청서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해외 신청서의 우선권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

2) 심사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가 자동적으로 실시된다. 출원한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고, 독창적인지 여부에 대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디자인이 등록된다. 심사관은 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등록 거절 사유를 보내고, 출원인은 12개월(3개월 연장 가능)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등록

뉴질랜드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출원 공개의 제도는 없으나,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는 등록된 디자인의 표시 또는 견본은 원칙적으로 등록증 교부일 이후 특허청에서 공중 열람에 제공된다.

디자인 등록까지는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의 실시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 중에는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과 관련하여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물품 수입 또는 양도, 타인에게 위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 가능하다(디자인법 제12조).

마. 심판제도

디자인 취소신청은 이해관계인이 등록일 현재 디자인이 신규 또는 원형이 아니거나 그 밖에 청장이 디자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다면 디자인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디자인법 제15조). 그리고 그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바. 비용

뉴질랜드의 디자인 출원료는 2020년 기준 $100, 갱신료는 처음 5년은 $100 두 번째 5년부터는 $200이다.

2.4. 상표

가. 보호대상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하고 자타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력을 갖춘 어떠한 형상, 냄새, 소리, 색채도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다(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한편 뉴질랜드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 전이라도 뉴질랜드에서 실제 사용을 함으로써 해당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신용을 확보한 상태라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나. 등록요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이유로 그 사용이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그 사용이 뉴질랜드의 법률에 위반되는 것, 출원이 악의로 행해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17조). 또한 식별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상표법 제18조). 뉴질랜드는 기타 상대적 거절사유로 인명을 포함한 상표, 왕실의 표시를 포함한 상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출원 서류

출원 시 출원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 상표 견본,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리스트 등이 필요하다. 출원 전 뉴질랜드 특허청을 통해 사전 유사상표의 등록여부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2) 심사

심사에서는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존재여부 및 상표 등록요건의 부합 여부 등) 및 상대적 거절이유(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뉴질랜드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해 거절이유를 기재한 잠정적 거절의 통보를 송부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특징적 제도로, 선행상표의 존재를 이유로 거절되었을 경우, 해당 선행상표 권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자기의 출원은 등록을 받게 되는 제도가 존재한다(상표법 제26조).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실체심사 결과 절대적 거절사유 및 상대적 거절사유 모두 발견되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특허청은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을 인정하며, 그 취지를 상표 공보를 통해 공고한다(상표법 제46조).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진다(상표법 제47조).

4) 등록

뉴질랜드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표 등록부에 그 취지가 등록된다(상표법 제181조, 상표규칙 129). 상표 등록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라.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가 등록이 되면 설정등록일부터 등록상표권자는 법에 따라서 지정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2) 보호기간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한편,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마. 심판제도

뉴질랜드의 심리절차 위원회는 상표법(2002)에 따라 수립된 기관으로, 상표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위원회이다.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 취소, 등록 무효, 상표 거절 결정에 대한 청문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청문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가령, 상표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아 최종 거절결정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3년 이상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뉴질랜드 특허청에 불사용취소신청도 가능하다.

바. 비용

상표 출원료는 $100, 갱신료는 10년마다 $200이다.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뉴질랜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은 독창적인 문학, 음악, 예술, 영상, 통신 및 출판 인쇄물 작품 등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노동, 기술, 독립적 판단이 투입된 모든 작품에 존재한다.

나. 저작권의 내용 및 효력

저작권은 작품 자체에 존재하여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자는 작품의 복제, 작품의 사본 배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작품의 공연이나 전시, 작품의 변경, 위 권리를 타인이 행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 등록요건

뉴질랜드는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 작품이 창작되는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며 따로 저작권의 효력을 위해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6 와인 등 지리적표시 등록법

가. 개요

뉴질랜드의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법(Geographical Indications (Wines and Spirits) Registration Act)이 2017년부터 시행됐다. 뉴질랜드는 세계 10대 와인 수출국의 하나로 와인은 뉴질랜드 수출 품목 중 5번째로 큰 이익(연 16억 5천만 달러)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뉴질랜드 브랜드를 현지 및 해외에서 차별화함으로써 브랜드 보호 강화 및 수익 창출 증대를 도모해온 바 있다.

나. 내용

도주 및 증류주 지리적표시(GI) 등록 제도는 i) 이해 당사자가 등록비와 함께 신청하면, ii) 등록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iii)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등록되어 뉴질랜드 상표 등록 시스템과 유사하다.

지리적 표시 등록이 신청되면 특허청은 등록법 및 등록규칙에 근거하여 이를 심사하여 신청결과를 3개월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IPONZ는 그 등록을 공고한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이 공고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는 개당 5천 달러이며, 최초 갱신 수수료는 2천 달러, 두 번째 갱신부터는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리적 표시 등록의 효력은 5년간 유지되며, 기간 만료 후 10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다.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사법구제

가. 상표,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제기

상표권 침해행위나 특허 침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은 통상 뉴질랜드 법원에서 접수되어야 하며, 관할은 뉴질랜드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New Zealand)이다. 원고의 선택에 따라 침해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106조, 제108조, 디자인법 제34조, 특허법 제150조 등).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대법원(Supreme Court of New Zealand)에 상소할 수 있다.

(a) 금지 명령

(b) 원고의 선택에 의해 손해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

(c) 침해품의 폐기

나. 구체적 조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치는 위와 같고, 구체적으로는 상표의 경우 위반표지의 소거 등에 관한 명령, 침해상품, 침해품에 대한 인도명령 등의 조치가 상표법상 규정되어 있다. 상표침해의 경우 상표의 삭제나 소멸 또한 명령할 수 있다. 무고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지만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

3.2. 행정구제

뉴질랜드에서 상표권자는 세관국장에게 통지에서 지정한 상품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며 해당 상품을 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 외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의 압류를 허용한다. 그 외에 다른 물품에 대한 행정적 압류 조치는 법원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3.3. 형사구제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서 IP 침해에 대한 형사 고발은 드물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IP를 민사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상표법은 상표법 침해에 대해 1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당국 경제부처(Ministry of Business & Enterprise)에 신고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Ⅸ. 호주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5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6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80
04. 기타 _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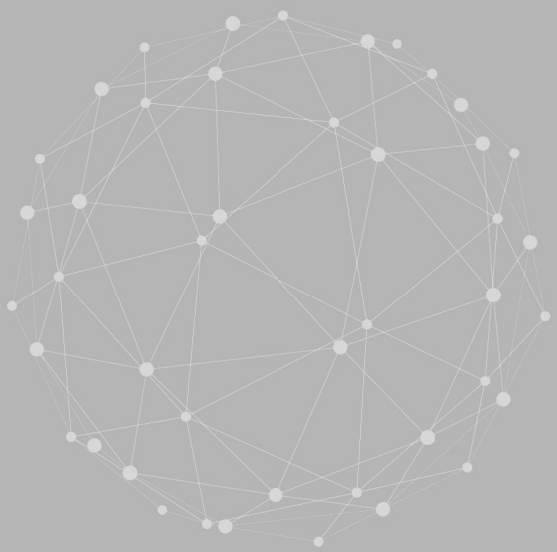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1. 개요

호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육종가 권리[103]) 등으로 나뉘어진다.

특허 등록요건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보호 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하다. 차이점은, 1) 초기 발명에 대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가 있고, 2)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공고된 특허에 대해서는 3개월 내로 어느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3) 호주에서는 특허법원이나 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나, 거절이유가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한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이의신청사유가 더 폭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제도에 있어서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혼합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형식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유효심사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비교적 짧고, 갱신 시 5년이 더 연장된다.

호주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0. 3. 31.)	가입	가입	가입 (2001. 7. 11.)	가입	가입

103) 권리자에게 식물의 번식(종자, 절단, 분할, 조직배양을 포함하는)조절에 관한 발명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수년 동안 그 발명을 수확할 권리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호주 특허청(IP Australia), 지적 재산권에 관한 자문 위원회(ACIP) 등이 있다. 호주 특허청은 연방정부의 Australian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 산하 기관이다. 1904년 연방정부 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식물육종가 권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림] 호주 특허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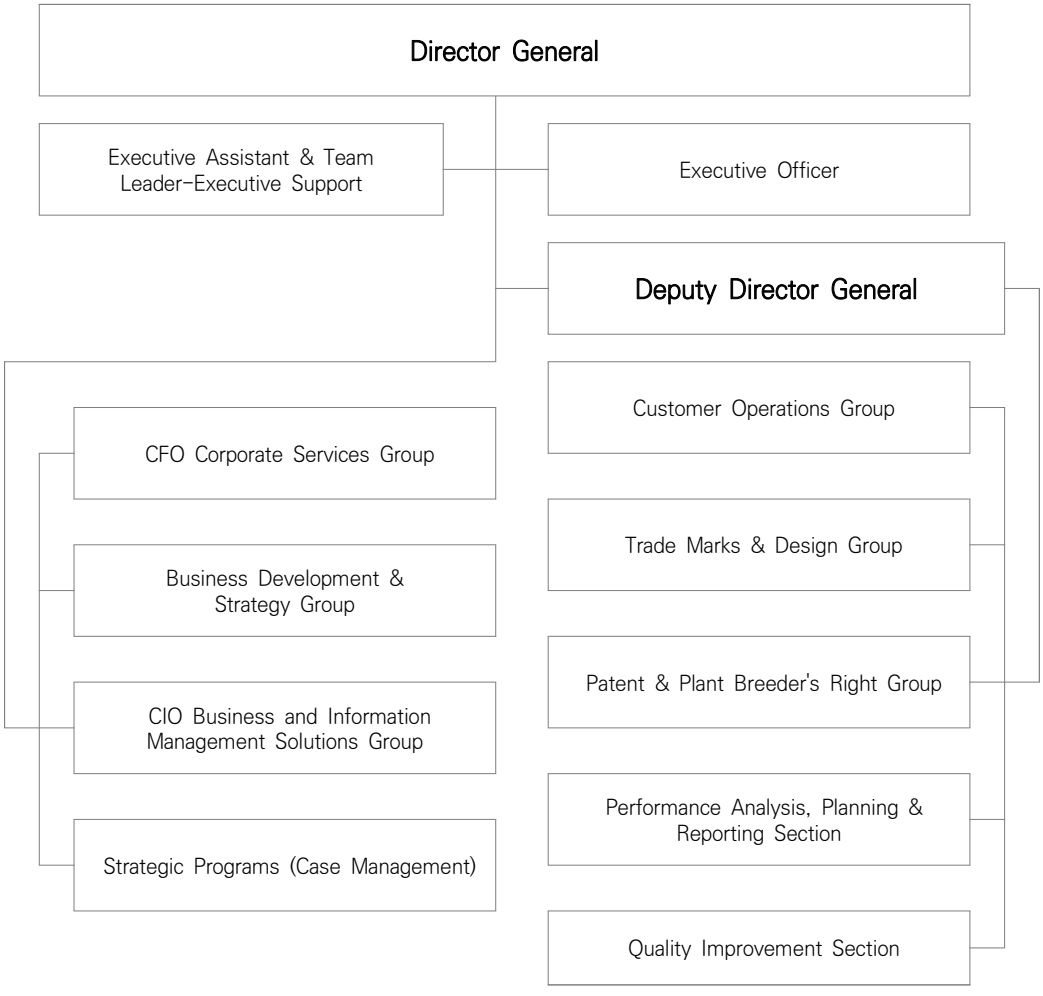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104)]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988	23,968	71,933	46,747	2,630	3,967
2015	2,291	26,314	80,773	49,035	2,821	4,203
2016	2,620	25,774	81,399	53,501	2,739	4,539
2017	2,503	26,403	80,230	57,844	2,854	4,854
2018	2,757	27,200	83,641	63,805	3,095	4,934

104)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AU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1. 특허

가. 보호대상

호주의 경우에는 특허법과 실용실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특허법(Patent Act 1990) 내에서 그 진보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Standard Patent) 출원과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 출원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양자의 구별 기준은 '진보의 정도'다. 일반특허에서는 '진보성' 단계를 만족하여야 하나 혁신특허는 진보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혁신성(발명이 전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그 차이가 발명의 작동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 innovative step)'을 요건으로 판단한다.

혁신특허는 실체심사 시 진보성이 아닌 혁신성 요건을 판단하며, 존속기간이 8년으로 일반특허에 비해 등록기간이 훨씬 짧고, 판단 기준이 낮아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발명 장려를 위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2월 27일, 지식재산권법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2020)이 26일 왕실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혁신특허는 2021년 8월 26일부터 출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동 개정의 시행일 전에 출원된 기존 혁신특허는 만료일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나. 등록요건

1) 발명의 성립성

호주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발명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sec18(2)에서는 인간 및 그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인 방법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에서는 혁신특허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이들의 발생을 위한 생물학적인 방법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규성

호주는 '신규성'에 대한 규정(sec7)을 두고 있는데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정보로서 하나의 문헌이거나, 둘 이상의 문헌이나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 당해 출원 전 출원되어 출원 후 공개된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sec24)도 두고 있는데, 신규성, 진보성, 혁신성 판단 시 각 하위 조항에서 해당되는 인용참증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인데 특허권자 등의 의사에 기한 경우, 의사에 반한 경우, 국가 등에 알려진 경우, 발명의 조사를 위해 알려진 경우가 제외된다.

3) 진보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발명에 비해서 의미 있는 개량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문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도에 따라 진보적(inventive)이거나 혹은 혁신적(innovative)인 것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일반특허(standard patent) 또는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로 나뉘게 된다.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특허 분야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not obvious)에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판단의 주체적 요건은 당해 기술 분야의 기술자이며 선행문헌은 하나의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이거나 당해 분야의 기술자 기준으로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다수의 선행기술이다.

한편 법문상 신규성의 경우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의 문헌이 인용참증인데 반해 진보성의 경우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이라는 표현이 없고 혁신성의 판단에서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정보'의 표현이 있다. 이는 이 규정이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구체적 판단사항까지 명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 내의 산업발전 여부를 고려하여 각 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1) 취득 절차

가) 명세서 작성(sec40)

명세서

(1) 가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드러나야 한다.
(2) 완전한 명세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하게 해당 발명이 드러나야 하며,
    (aa)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출원인하게 알려진 최선의 방법이 드러나야 한다.
  (b) 일반특허 출원에 관련된 경우 – 청구항 또는 발명을 특정하는 청구항으로 끝내야 한다.
  (c) 혁신특허 출원에 관련된 경우 – 발명을 특정하는 최소한 1이상 5이하의 청구항으로 끝내야 한다.
(3) 청구항 또는 청구항들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명세서에서 공개된 사항에 의해 적절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4) 청구항 또는 청구항들은 하나의 발명에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나) 심사절차

(1) 형식심사

일반특허 출원의 경우, 명백하게 sec18(1)(b)(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이 이외의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고(sec48) 그 외 sec5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식품이나 제약에 사용되는 경우, 단순히 공지 물질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출원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출원공개

특허청은 출원인이 출원서와 명세서를 제출하면 형식적 요건을 먼저 판단하여 수리하고, 형식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특허공보(Official Journal)에 공개가 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출원제도가 있고 가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원공개는 가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에 이루어진다.

(3) 심사청구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는데, 우선일로부터 5년 이내면 누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기간의 무한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정의 전체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반면 혁신특허의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간단한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혁신특허의 경우 형식적 사항에 관한 검사(formality check)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심사청구를 요하지는 않는다.

(4) 심사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일로부터 12월 내에 심사보고서가 발행된다.

(5) 이의신청

출원공개가 된 특허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3개월 내에 해당 특허가 등록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기타

호주는 PCT 가입국이므로, PCT 국제출원에 의한 호주 국내단계 진입 출원이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한다. 만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호주 출원이 요구된다.

2) 출원/등록 기간

실체심사를 거쳐서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우선심사청구의 경우 3~4주 정도, 통상 6개월~11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혁신특허출원은 실체 심사 없이 방식 심사만을 거쳐 1개월 내에 신속하게 등록된다.

라. 특허권의 효력

1) 보호기간

호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일반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혁신특허는 8년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허가 등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최대 5년의 기간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2) 특허권의 효력

sec13 특허에 의해 주어지는 배타권

(1) 이 법에 따라,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존속기간 동안 발명을 실시하고 타인에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 상기의 독점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며 법에 따라 지분 또는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다.
(3) 특허는 특허권이 설정된 지역 전역에서 효력이 있다.

호주는 법문을 통해(sec13) 특허권자에게 특허 존속기간 동안 발명을 실시하고 타인에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권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법에 따라 지분 또는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고, 특허권이 설정된 지역 전역에서 효력이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 혁신특허는 권리행사 면에서도 실체심사를 거치는 인증을 받아야 하기는 하나 일단 인증을 받으면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실시,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실시(비의약품), 실험적 목적을 위한 실시 등 일정한 경우 특허권이 제한되는 것이 특허권의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침해파트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Part 1).

3) 특허권의 실시

호주에서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배타적 실시권(exclusive licence), 비 배타적 실시권(Non-exclusive licence)을 설정할 수 있다. 비 배타적 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특허 사용에 대해서 침해가 성립한다고 하여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실시권자로서는 정당한 사용권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배타적 실시권은 사용권한을 보장해줄 뿐이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권한은 갖지 못하는 독점성이 없는 실시권이다.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하에 특허권을 사용하고 상업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며 사용권자는 그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 한다. 특허권자가 비 배타적 실시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권과 동일한 내용의 실시권를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비배타적 라이센스는 어떠한 보호를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실시권설정 자로서는 특허 침해, 특허의 포기 또는 기타 실시권의 관련 권리에 대해 비 배타적 실시권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줄 의무가 없게 된다. 따라서 비배타적 실시권자는 이를 유념하여 자신의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4) 선사용권

선사용권이란 법정 실시권의 하나로서 법정 실시권이란 일정요건 하에 법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허 발명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선사용권이 인정되듯이 호주도 출원일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선사용을 두고 있다(sec119).

5)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의 이전은 sec1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특성상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 특허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직접 양도 등을 하지 않아도 되나 권리가 다수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특성상 타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 계약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다. 특허권의 이전은 서면으로 하여 서명을 해야 하며 일정 지역, 특허권의 일정 부분에 한하여 양도계약을 할 수도 있다.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체의 변경에 대하여 IP Australia에 알려야 한다.

마. 심판제도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심판원과 특허법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심판에 해당하는 것을 특허청 또는 연방법원, 기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 심사관의 결정, 예를 들면 등록 거절이나, 보정에 관련된 사항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이나 기타 관할권 있는 법원에 항소하면 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청에 비침해선언신청, 특허무효의 신청을 하면 된다.

바. 비용

2020년 8월 일반특허의 온라인 출원을 기준으로, 신규 특허 출원시 출원료(application fee) $370를 납부야 한다. 심사청구료는 일정하게 $490이며, 등록료(acceptance fee)는 $250이다. 해당 특허출원이 승인된 경우 청구항 20항 초과시 한 개의 청구항마다 추가로 $110이 발생한다. PCT의 경우 국제출원수수료, 심사료, 취급료 등이 발생한다.[105]

105)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 특허청 사이트(https://www.ipaustralia.gov.au/patents/understanding-patents/time-and-costs) 참고

2.2. 디자인

가. 보호대상

호주는 디자인법(Design Act 2003)에서 디자인을 물품과 관련한 시각특징이라 정의하고 있고 물품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업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을 물품이라 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한편 호주 디자인법은 촉감, 재료, 표면, 색은 시각적 특징에서 제외하고 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sec43, 규칙 reg4.06)

- 1987년 올림픽 표장보호법의 제18조에 의해 그 디자인의 등록을 불허하는 경우(sec43(1)(b))
- 1989년회로배치법(circuit layouts act1989)이 정의하는 집적회로나, 그러한 집적회로의 일부, 그러한 집적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mask)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메달(medals, reg4.06(a))-보통 디스크, 별, 십자가, 또는 같은 모양의 금속의 평면 조각, 사람, 행동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거나 치하하기 위해서 보상의 역할을 하는 것
- Anzac regulation 2(4)에 따라 보호되는 단어, Anzac은 제1차 대전 때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연합군단을 말한다.
- 종이 지폐(reg4.05)
-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scandalous designs)
- 호주와 호주의 주, 영토, 도시, 지방, 공공기관, 기관 또는 다른나라의 그것에 대한 무기, 국가, 봉인 등

나. 등록요건

호주는 디자인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 실체적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는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무심사 등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미하여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중간단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한 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신규성이란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창작성은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선행 디자인의 일부를 형성하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미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1) 신규성

호주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신규성 상실의 디자인은 거절이유뿐만 아니라 무효사유가 된다.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선행 디자인과 비교하여 그 디자인이 신규한 경우인데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선행디자인이란,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sec15(2)(a)), 호주 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sec15(2)(b)), 지정 디자인에 우선일이 선행하지만 그 지정 디자인이 기재된 디자인출원의 우선일 또는 그 후에 공개된 디자인(sec15(2)(c))이 이에 해당한다.

2) 창작성

호주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선행 디자인의 일부를 형성하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미감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면 창작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미감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중점적으로 sec19(1)에서 '실질적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 우, 두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며' 고려사항으로서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선행 디자인의 발전 정도, 신규하고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디자인의 임의적 특성,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관련된 그 부분의 전체적인 양, 질 및 중요도, 그리고 혁신적인 그 디자인 창작자의 자유(freedom of the creator of the design to innovate)"를 고려하게 된다. 디자인법 sec16(2)에 의하면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유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3) 공업상 이용가능성

법조문상에서는 공업상이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규성과 창작성은 디자인의 성질인 것이고, 해당 출원된 디자인이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디자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의 성립성이 없는 것을 우회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4) 1이상의 디자인

단일 디자인 등록 출원은 1물품에 관한 1디자인, 1물품 이상에 관하여 공통되는 1디자인, 1물품 이상에 관한 1이상의 디자인, 1물품 이상에 관한 1이상의 디자인(단, 각 물품은 동일한 로카르노 협정 분류에 속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호주의 디자인법에서는 동일 물품분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다 물품에 관한 여러 개의 디자인이 가능하다.

다. 취득절차, 출원/등록 기간

1) 출원서류

호주에서의 디자인 등록출원은 온라인, 팩스, 우편, 직접 특허청 방문 등의 방법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물품의 명칭
- 신규성과 창작성에 관한 언급(의무는 아님)
- 조약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제1국 출원일자, 해당국 출원번호, 우선권의 기초 출원국)
-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

2) 출원일의 인정

호주에 디자인 출원하는 자는 sec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도면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법령으로 정한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최소출원 요건으로 이를 만족시키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 인 출원의 최소출원요건을 만족하였다는 취지와 인정된 출원일, 출원서에 기재된 각 디자인의 등록 또는 공개 요구가 없는 경우 sec35에 따라 그 요구가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최소출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일이 인정된다. 출원인이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한 상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다.

3) 형식 심사(formalities check)

출원이 진행되면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sec39, 40의요건을 만족하면 디자인이 등록된다. 즉 호주의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의 중간 단계를 취하고 있어 sec39, 40에서 형식심사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일단 등록이 되지만 후에 누구든지 등록 디자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신규성, 창작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신규성,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 등록권자가 그 디자인의 등록 당시에 적격자가 아닌 경우, 법령으로 정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철회하게 된다.

형식심사는 제1절 sec39(formalities check)에서 1디자인 만에 대한 출원의 형식요건 심사에 대해 규정과 sec40(formalities check)에서 1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의 형식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우선, 디자인이 출원서에 기재된 유일한 디자인인 경우, 출원인이 그 디자인의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 출원이 법령으로 정한 형식 요건 심사를 충족시킨 경우, 디자인이 하나 이상의 물건에 대하여 각각의 물건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인 경우, 등록관이 sec4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되고 그 디자인은 등록이 된다. 그리고 1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출원의 경우, 즉 1 이상의 디자인이 디자인 출원서에 기재된 경우, 출원이 1 이상의 디자인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각 하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하는데 디자인 출원이 동일한 로카르노 협정 분류에 속하는 1이상의 물품에 관한 1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것인 경우, 디자인 출원이 그 디자인의 각 물품에 관련된 공통 디자인으로서 1 이상의 물품에 관한 공통 디자인에 관한 취지를 기재한 경우, 디자인 출원 법령으로 정한 형식요건 심사를 충족시킨 경우, 등록관이 sec43(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디자인 중 하나라도 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그 물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디자인인 경우가 그 하위규정에 해당한다.

4) 디자인의 등록

디자인 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식적 거절이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정한 경우 디자인 등록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 출원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이 되며 출원인은 디자인권자가 된다. 등록관은 소정의 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관은 그 디자인이 등록되었음을 기재한 통지를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의 심사

형식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효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기 권리화와 심사의 간소화를 위해 무심사등록의 형식심사만을 하지만 권리의 안정성과 제3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해당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 등록 가능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 법령으로 정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 등록은 철회(revocation)되어야 한다.

6) 출원/등록 기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106]

라.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고(sec46(1)(a)), sec47에 의해 존속기간 갱신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처음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2) 디자인권 갱신절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의 최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호주에서 디자인권을 5년 이상 유지하고자 하는 등록 디자인에 관한 등록권자는 그 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갱신출원을 할 수 있다. 그 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재된 디자인의 출원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등록관은 그 출원이 법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sec47).

3) 디자인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 중에는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과 관련하여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호주로의 물품수입 또는 양도 또는 사업을 위한 사용, 물품의 판매 또는 임대, 물품의 판매 또는 임대의 청약, 호주로의 수입, 판매, 임대, 그 청약을 하기위한 보관, 타인에게 위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실시권의 허여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법으로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다.

4) 실시권

가) 실시권의 종류

디자인법에서의 실시권 종류에는 계약에 의한 실시권과 법정 실시권이 있는데 계약에 의한 실시권으로는 배타적 실시권(exclusive licence), 독점적 통상실시권(sole licence), 비 배타적 실시권 (non-exclusive licence)이 있다. 법정 실시권으로는 sec90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

106) https://www.ip-coster.com/IPGuides/industrial-design-australia

실시권(compulsory licence)이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디자인법에서 강제실시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실시권의 설정

실시권 설정행위는 디자인권에 하위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등록권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 기타사유로 인해 적법한 경우 실시권이 설정된다.

마. 심판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 디자인권은 간단한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권리가 부여되는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데 만일 권리 발생 후 법원 또는 신청자가 디자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도록 유효심사확인(certified)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 같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고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을 때에는 등록 디자인 무효 결정을 한다. 따라서 호주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등록이 우리나라보다 간소하고 신속할 수 있으나 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다는 것과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침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하여 유효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 디자인법의 무효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 보정각하 불복심판 등은 존재하지 않아 무효심판과 거절결정 등록심판은 연방법원에서 등록을 다투는 문제로 귀결된다.

바. 비용

출원료의 경우 2020년 기준 온라인 신청 시 250$, 갱신등록료의 경우에는 처음 5년 만료 후 5년을 갱신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320$를 지불한다.[107]

107) 기타 관납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특허청 사이트(https://www.ipaustralia.gov.au/designs/applying-for-a-design/time-and-costs)참고

2.3. 상표

가. 보호대상

호주 상표법(Trade Marks Act 2000) sec17의 상표에 관한 정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으로서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사업으로 거래 또는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이다.

또한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서비스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sec 19 (1)(a)(b)(c)에서 상품(goods), 서비스(service), 상품과 서비스(both goods and service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도 등록이 가능하다. 호주에 출원할 수 있는 표장은 글자 (letter), 숫자(number), 단어(word), 구절(phrase), 소리(sound), 냄새(smell), 문양(shape), 로고(logo), 그림(picture), 또는 이들의 조합을 상표로 하여 출원할 수 있다. 호주의 상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반 우리나라의 상표에 해당하는 일반 상표(standard trademark), 방어적 표장(defensive trademark), 증명 표장(certification trademark), 단체 표장(collective trademark), 관련 표장(series trade mark)이 있다.

나. 등록요건

상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등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용의사 없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후에 불사용 상표등록 말소신청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상표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인의 표장과 동일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및/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표장이므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1류 이상을 지정하여 출원해야 한다. 또한 상품 등에 관련한 ‘표장’이므로 상표법에서 허용하는 표장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취득절차, 출원/등록 기간

1) 출원절차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해당 지정 상품에 대하여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원은 sec27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상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자가 당해 상표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할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자가 당해 상표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한을 다른 자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자가 설립이 예정되어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법인이 해당 상표를 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이라 보고 해당 상표를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출원서는 규칙에 따라, 규칙에 언급된 서류와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격이 있는 자가 출원해야 하나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더라도 인정된다. 출원서에는 상표 표시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규칙에 따라 상표 등록을 요구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호주는 상품분류 체계로서 NICE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5class 분류가 있다. 상표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 분류에 따라 1개 이상의 류에 있는 다수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호주 특허청은 http://xeno.ipaustralia.gov.au/tmgoods.htm에 들어가서 상품명을 입력하면 상품류 구분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체적 요건으로서는 1인 또는 공동 출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호주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가입국이므로 국제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다.

2) 출원일 인정, 출원의 수리 및 심사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서 출원일이 인정된다. 호주의 상표제도 또한 선출원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 받을 수 있고 따라서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먼저 출원하여 출원일이 인정 된다면, 후에 완전한 출원의 형식을 갖추어 늦게 출원한 출원인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관은 심사 후 출원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여부 또는 이 법에 의거한 거절이유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을 접수해야한다.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출원을 수리하게 된다(sec33).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출원을 거절하며 이때는 반드시 출원인에게 합리적인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 공고제도란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호주도 출원공고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심사관이 출원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한 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accept)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보에 발행하게 된다(sec30). 이로 인해 제3자는 누구든지 해당 상표등록 출원이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여 이의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한 후 거절결정을 내리거나 이의신청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Registration)을 할 수 있다.

4) TM Headstart제도

상표 출원 전에는 자신의 상표등록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이 좋다. 한편 호주 특허청에서는 특허, 디자인과는 달리 상표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에 앞서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간략하게 판단 받아 볼 수 있는"TM Headstar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10일(working day기준)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결과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상표가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절차이다.

5) 출원/등록 기간

일반적으로 심사 소요기간은 4~6개월이 소요되고,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한 통상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마. 상표권의 효력

1) 보호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또는 등록원부에서 말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존속기간이 만료된다(sec72). 갱신등록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2) 상표권의 효력과 보호범위

상표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sec20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표가 등록이 되면 설정등록일부터 등록상표권자는 이 법에 따라서 지정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이 등록상표를 침해할 경우의 권리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소송의 법적인 근거가 된다.

등록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타인의 사용 금지효는 지정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데까지 그 보호범위가 미치므로, sec120에서는 누구든지 등록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기만적으로 유사한 표지를 그 등록 상표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표권의 사용권

상표법에서 사용권이란 등록상표권자, 배타적 사용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sec8). 또한 상표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용권 사용자(authorized user)의 권리도 상표권자의 권리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sec26).

배타적 사용권은 가장 상업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사용권으로서 그 형태는 상업화를 실현하는 다른 방법이다. 상표권자로서는 상황에 따라 exclusive

license, sole license, non-exclusive license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양방향의 cross license도 설정할 수 있다. exclusive는 배타적 사용권으로 사용권자 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권 설정자를 포함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사용권이며, non-exclusive는 사용권자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타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non-exclusive 사용권을 설정하여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사용권이다.

4) 상표권의 양도

등록상표와 사용권은 개인의 재산권이고 따라서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 조에 따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할 수도 있다.

바. 심판제도

호주에서는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등록관의 결정, 명령, 지시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연방법원(the Federal Court)이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 합의체(Full Court)에 불복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special leave)가 인정되면 대법원에도 항소가 가능하다. 불사용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신청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호주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원은 sec190에 규정되어 있는데 연방법원(the Federal Court), 주 최고 법원(the Supreme Court of State)이 이에 해당한다. 이 법에 규정된 소정의 법원이 갖는 관할권은 크게 연방법원의 관할권과 연방법원을 제외한 법원(주 법원)의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연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데

특히, 등록관의 결정,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배타적인 관할권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법원의 관할을 제외하며 상표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연방법원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연방법원 이외의 법원의 관할의 경우에는 sec192(2)에 의하면 헌법에서는 상표침해 소송, sec129에 의한 소송, 법에 따라 생기는 사항으로서 상기 소송과정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territory)의 최고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 비용

호주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시에는 약 250$, 등록시에는 300$의관납료를 납부한다.[108]

2.4. 저작권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내용물(영상물, 음반물, 방송물, 편집물) 등으로 구성된다.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시 침해금지, 손해배상, 이익환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조항이 있다.

다. 저작권의 효력(보호기간)

미국-호주 간 FTA체결에서 호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무명·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이다. 단, 작가의 신분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음반과 영상물은 공표한 해로부터 70년간,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된 해로부터 50년간 보호한다.

108) 그 외 더 자세한 관납료 등은 호주의 특허정 사이(https://www.ipaustralia.gov.au/trade-marks/understanding-trade-marks/trade-mark-costs) 참고

라. 등록요건

호주는 저작권 보호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저작권 자원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은 없다.

마. 심사기관

최상위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 아래 연방법원과 주법원, 지방법원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특수한 분야의 정책과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법원이 존재한다. 저작권 문제를 전담하는 '저작권재판소'(Copyright Tribunal)가 196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모든 민사와 형사재판의 1심은 연방지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서 관할하며, 항소심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확대연방법원(Full Federal Court)에서 관할하고 상고심은 고등법원(High Court)이 관할한다. 저작권재판소는 저작권 이용 허락에 관한 법률,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운영에 관한 조항, 이밖에 저작권 제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심사한다.[109]

2.5. 경쟁 및 소비자법

가. 개요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the Competition and Comsumer Act 2010)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 법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저명상표가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그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 공중을 오인을 일으키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나. 내용

동법 volume3의 sec151 각 하위 규정에서는 상품 또는 가격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상품 또는 상품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수리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잘못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잘못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요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당사항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109) 해외저작권정보 해외저작권가이드 호주,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australia/emergency_response.do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1. 사법구제

무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각 해당 권리에 따른 법에 의해 침해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침해소송 내에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에서는 sec122에서 법원이 특허권의 권리 구제의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한에는 금지명령이 포함되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침해행위의 악함 정도, 유사한 특허침해를 방지할 필요, 특허권자 가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고 통지하였는지 여부, 특허침해로 인해 이익액이 발생된 경우, 기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추가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 게다가 호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침해사례로 관련 분야에서 선례가 될 만한 경우는 추가 손해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침해소송이 가능한 소정의 법원이란 특허법에서 연방법원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호주의 연방법원은 시드니(Sydney), 멜버른(Melbourne), 브리즈번(Brisbane), 아델라이드(Adelaide), 캔버라(Canberra)의 5개가 있다.

상표권에 대해서는 상표 침해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호주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원은 연방법원(the Federal Court), 주 최고 법원(the Supreme Court of State) 등이다.

3.2. 행정구제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따로 특허심판원이라는 특수 행정기관을 두고있지 않다. 다만 상표법, 저작권법, 올림픽표장등에관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법에 반하여 호주 국내로 유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입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압류의 절차를 행하고 있다.

3.3 형사구제

호주의 경우에는 상표법과 저작권법같은 지적재산권법에는 형사적 처벌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허법(Patents Act1990)의 경우 특허에 관한 잘못된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나 특허청장의

서류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형사소송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상표법, 육종가 권리에 한한다.

상표권의 침해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약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소에 의한다.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sec145, sec146, sec148, sec149가 있다. sec145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공급되고 있거나 공급될 예정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되어 있는 상표를 상표권자 또는 라이선스권자의 허락 없이 제거하거나 위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sec146에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공급되거나 공급예정인 상품에 대해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sec147에서는 침해를 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sec148에서는 잘못된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sec145, 146, 147, 148의 행위에 대하여 penalty unit으로 500을 넘지 않는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3.4 기타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demand letter(요구서)를 송부하는 것이다. 침해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상대방에게 요구서(demand letter)나 경고장(warning letter)을 보내는 것은 해당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04 기타

호주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으로는 Patent Act, Trade Marks Act, Australia Design Act 등이 있다.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권별 목차

1. 아시아		2. 유럽		3. 북미·중남미	
01. 대만	1	01. EU	1	01. 미국	1
02. 라오스	21	02. 그리스	17	02. 캐나다	35
03. 말레이사아	45	03. 네덜란드	35	03. 과테말라	65
04. 몽골	75	04. 덴마크	61	04. 도미니카공화국	85
05. 미얀마	95	05. 독일	77	05. 멕시코	103
06. 방글라데시	119	06. 루마니아	103	06. 베네수엘라	131
07. 베트남	141	07. 벨기에	119	07. 브라질	149
08. 스리랑카	169	08. 불가리아	133	08. 아르헨티나	175
09. 싱가포르	189	09. 세르비아	151	09. 에콰도르	193
10. 인도	215	10. 스웨덴	175	10. 칠레	213
11. 인도네시아	233	11. 스위스	197	11. 코스타리카	235
12. 일본	259	12. 스페인	217	12. 콜롬비아	253
13. 중국	295	13. 슬로바키아	239	13. 쿠바	275
14. 캄보디아	321	14. 영국	253	14. 파나마	293
15. 태국	345	15. 오스트리아	281	15. 파라과이	313
16. 파키스탄	367	16. 이탈리아	295	16. 페루	335
17. 필리핀	389	17. 체코	307		
18. 홍콩	419	18. 크로아티아	323		
		19. 폴란드	339		
		20. 프랑스	355		
		21. 핀란드	379		
		22. 헝가리	399		

4. 중동		5. 아프리카		6. 러시아·CIS·대양주	
01. 모로코	1	01. 가나	1	01. 러시아	1
02. 사우디아라비아	29	02. 나이지리아	25	02. 벨라루스	27
03. 아랍에미리트	51	03. 남아프리카공화국	45	03. 아제르바이잔	47
04. 알제리	79	04. 모리셔스	71	04. 우즈베키스탄	63
05. 오만	99	05. 모잠비크	87	05. 우크라이나	85
06. 요르단	123	06. 세이셸	111	06. 카자흐스탄	105
07. 이라크	149	07. 수단	131	07. 키르기스스탄	123
08. 이란	169	08. 에티오피아	149	08. 뉴질랜드	143
09. 이스라엘	189	09. 우간다	173	09. 호주	157
10. 이집트	209	10. 짐바브웨	197		
11. 카타르	233	11. 케냐	221		
12. 쿠웨이트	249	12. 코트디부아르	247		
13. 터키	269	13. 탄자니아	269		
14. 튀니지	293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현지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 ·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 디자인 출원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지원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		
신청기업	출원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신청
▼		
KOTRA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 · 중견기업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社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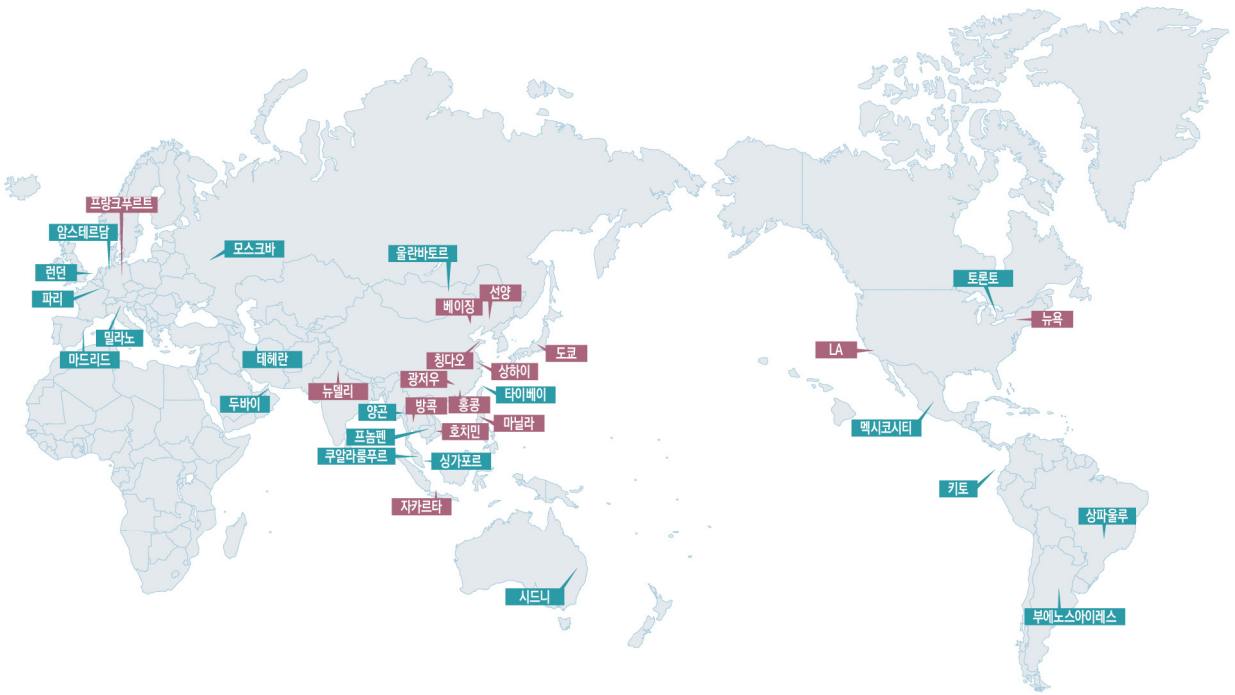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laipdesk@kotra.or.kr
	뉴욕	1-646-918-5594	graceahn@kotra.or.kr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donghee.lee@kotra.or.kr
일본	도쿄	81-3-6273-4638	dhwon@kotra.or.kr
태국	방콕	66-2-035-1558	bkk_ipdesk@kotra.or.kr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seaegghr@kotra.or.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juheelee@kotra.or.kr / juheejkt@gmail.com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manila@kotra.or.kr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lsoojung@kotra.or.kr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ipkotra@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118)	shanghaiip@kotra.or.kr
		86-21-5108-8771(116)	MF.Jin@kotra.or.kr
	칭다오	86-532-8388-7931(209)	qdxuxiang@kotra.or.kr
	광저우	86-20-2208-1600(1405)	shane.bai@kotra.or.kr
	선양	86-24-3137-0770(813)	ipdesksy@kotra.or.kr
	홍콩	852-3465-2921	hkg_ipdesk@kotra.or.kr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KOTRA자료 20-240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6. 러시아·CIS·대양주

발 행 인 : 권 평 오
발 행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발 행 일 : 2020년 12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02-3459-3357/3359
작성기관 : 법무법인(유한) 다래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979-11-6490-574-4 (94320)
979-11-6490-575-1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